

# 부패방지 추진정책 성과 및 과제

2012. 4.

 한국행정학회



## 제출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패방지 추진정책 성과 및 과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4

**한국행정학회**

연구책임 : 윤 태 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목 차

## 제1부 평가 요약

1. 평가의 배경 .....	1
2. 「2002 부패방지기본계획」의 의의와 특징 .....	1
3. 부패방지기본계획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	3
4. 평가체계 .....	7
5. 세부과제별 주요성과 정리 .....	11
6. 부패방지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성과 등 분석 .....	33
7. 향후 중장기 부패방지기본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 .....	43

## 제2부 세부과제별 평가내용

1. 일반행정 부문 .....	49
2. 사법 부문 .....	93
3. 정치 부문 .....	143
4. 기업 부문 .....	221
5.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부문 .....	301



## 1. 평가의 배경

-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2002년 7월 「부패방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들이 추진됨
- 「부패방지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경과되었으며, 새로운 부패방지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등에 대한 성과의 평가가 필요하며,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2002년 수립된 「부패방지기본계획」상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추진과정상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2002 부패방지기본계획」의 의의와 특징

### 1) 의의

-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음
-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서 부패방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부패방지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임
- 즉 2002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에 의하여 수립된 부패방지기본계획은 독립된 부패방지기관에 의한 최초의 부패방지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우리나라의 부패방지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획안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음

## 2) 계획상의 주요 특징

- 개괄적이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실태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계획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IMD, TI 등 부패문제와 관련한 국제조직들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거시적 관점을 보여주었음
- 그 동안의 부패방지 관련 논의가 일반행정, 정치, 사법, 기업 등 다양한 영역별로 분리되어 논의되었었는데, 이 계획안에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부패방지과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일반행정,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종합적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시민사회 영역까지 포괄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계획 수립 당시의 현황에 기초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부패방지 정책들을 제시하였음. 특히 당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부패방지 관련 다양한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음
- 계획안에 제시된 과제들은 과제별로 다양하지만, 일부 과제들의 경우 구체적인 과제의 추진방향과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적 관점을 활용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계획안에 포함된 부패방지 관련 많은 과제들은 부패방지위원회보다는 다른 기관들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계획추진체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본계획에서는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통한 과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 3. 부패방지기본계획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 비전 : 삶의 질이 높은 투명한 사회
- 목표 :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국가
- 주요 전략
  - 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엄정한 처벌
  -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식
  -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선진 사회구조
- 추진주체 : 민-관 협력 방식 + 기관 자발적 노력
- 추진방향
  -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 감시기능 강화

-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 실효성 제고
-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부패 유발적인 사회구조 개선
- 부패 친화적인 국민의식 및 관행 개선
-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범국가적 부패방지대책 추진, 평가체계 확립

○ 단계

- 1단계(2002): 신규 제도 도입 등 반부패 인프라 정비
- 2단계(2003-2005): 부패유발 제도, 환경 개선(TI 20위권)
- 3단계(2006-2010): 제도선진화, 시스템 개선(TI 10위권)

○ 부문별 주요 내용

- 「부패방지기본계획」상의 부문은 그대로 적용하였음. 다만 세부과제의 경우 계획서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과제별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된 대표과제를 세부과제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리된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안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며, 대표과제 중심으로 정리되어있음

부문	과제	세부과제(대표과제)
일반행정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공직사회 윤리관 확립 기관 부패방지 역량강화 비위 공직자 적발, 처벌 실효성 확보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확대 계약제도 개선 청렴서약제 도입 확대 행정정보공개 확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확산 공직자재산등록제도 내실화 자체감사역량 강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사법	부패행위 처벌 엄정성, 형평성 확립 사법과정 투명성 제고 법조인사 공정성, 민주성 제고 법조 주변 비리유발 환경 개선 사정기관 외부 통제장치 확립	양형기준 합리화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 대응 사법절차 공개 검찰 소추 재량권 개선 검찰인사 중립성 확보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전관예우 관행 개선 사정기관 통제장치 마련
정치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 정치자금 수입, 지출 투명성 확보 정치활동 공개, 윤리규정 강화	국민경선제, 선거공영제 강화 선거비용 선관위 조사 강화 불법 정치자금 적발, 처벌 강화

	국민 정치의식 제고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국회 윤리규정 강화 국민참여의식 제고 공직선거 후보자 부패기록 공개
기업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기업 윤리경영 확립 공기업 부패요인 개선	회계투명성 증대 기업공시제도 강화 기업 내·외부 통제 강화 기업 윤리경영 기반 확립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조달체계 등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국제협력	반부패 윤리기반 확립 체계적 반부패 교육 실시 국민참여 촉진 위한 반부패 홍보 반부패 국제협력, 국가이미지 제고	사회 윤리규범 확립 청렴성 그룹 발굴, 확산 투명성 포럼 운영 학교 교육 통한 반부패 교육 반부패 전문강사 육성, 활용 부패방지 전문교육 확립 부패신고 등 네트워크 강화 시민단체 지원 강화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반부패 관련 국제행사 참여

## 4. 평가체계

### 1) 평가대상 과제

- 본 과제의 평가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부문별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하였음. 각 부문별 세부과제수는 다음과 같음. 다만 세부과제안에 복수의 하위과제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과제수는 이 보다 많게 됨

부문	일반행정부문	사법부문	정치부문	기업부문	시민사회,국제협력
세부과제수	9	8	7	6	10

### 2) 평가항목

- 본 평가는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정의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니며, 다소 추상성이 있는 기본계획의 추진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성과평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 즉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확인함으로써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이 계획의 경우 성과지표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각 세부과제들이 지향하는 의미나 목적을 법과 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나 구현하고자 하였는가가 평가대상이 됨

- 특히 대부분의 과제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부패방지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의 도입 혹은 수정 등이라는 점에서, 본 과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세부과제별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의 도입, 정비 등과 관련됨
- 이와 같은 법과 제도, 정책들은 한번에 도입,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에 걸쳐서 정비된다는 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세부과제들이 평가대상기간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추적하여야 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세부과제별로 평가대상기간(2002-2011) 동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법과 제도,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와 같은 과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과제의 평가는 일반적인 평가적 의미보다는 해당 세부과제들의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과정의 정리라는 측면이 매우 강하며, 이와 같은 정리에 기초하여 해당 과제의 당초 목적의 충족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본계획 자체가 매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평가에서는 기본계획 자체의 체계성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하고자 함. 이에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기본계획의 체계성에 대한 평가와 과제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 즉 부패방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제별로 효과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기대하였던 성과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과제에서는 세부과제별로 기본계획의 체계성과 과제별 추진성과라는 2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함
  - 문제의 인식 : 해당 과제를 제시하게 된 문제의 인식을 정리함. 이를 통하여 과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분석적, 체계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제의 명확한 내용 정의와 추진방향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 계획의 포괄성 : 세부과제별로 동일한 수준에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단위 세부과제별 추진내용들이 해당 세부과

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함.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를 구성하는 내용이 극히 단편적인 경우 과제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임

- 계획의 구체성 : 과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부과제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임. 단순히 의미나 목적만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과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혹은 과제도출의 근거, 추진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됨으로서 과제의 실행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임
- 관련 법령과 정책 : 관련 법령과 정책은 평가의 대상은 아님. 그러나 과제별로 법과 제도의 도입이나 정비가 필요한 과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제가 있으며, 이것은 과제 추진의 난이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해당 세부과제별로 관련 법령과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함
- 과제별 성과 : 세부과제별로 평가대상 기간 동안 어떻게 제도가 변화하였는지를 법제, 개정, 정책도입 중심으로 정리하며, 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해당 세부과제별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도 정리함

구분	기본계획의 체계성	기본계획 추진성과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인식</li> <li>- 계획의 포괄성</li> <li>- 계획의 구체성</li> <li>- 관련 법령과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별 성과</li> </ul>

### 3) 과제별 정리

- 위의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세부과제별로 내용을 정리함. 명확한 정리를 위하여 각 세부과제별로 동일한 표양식을 마련하여 정리하였으며,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부 표를 변형하였으며, 세부적인 설명이나 자료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표준양식 뒤에 별도로 제시하였음

## 5. 세부과제별 주요성과 정리

### 5-1. 일반행정 부문

5-1-1. 행정의 투명성 제고	
과제내용	과제 추진상황(단기 성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등 민원처리절차 투명화,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3. 2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개정하여 종이문서 이외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처리결과 확인 가능</li> <li>- 2006. 6.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시행</li> <li>- 2011년말 기준 민원 24시 통하여 3,013종 신청, 1,191종 발급 가능</li> <li>※ 중복 서류 및 과다 서류 감축방안 필요</li> </ul>
계약 등 과정에서의 부패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10. 통합 조달정보시스템(G2B:나라장터) 개통, 연간 75조원 거래</li> <li>- 전자입찰제 확대 : 2003년말 14만건 입찰공고중 전자입찰 99,020건이 2011년말 402,435건 입찰공고중 전자입찰 288,533건으로 증대</li> <li>- 청렴서약제 도입 확대 : 2000년 서울시에서 ‘청렴계약제’ 실시 시작(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 제정)</li> <li>-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렴서약제 활용중</li> <li>※ 청렴서약제의 형식성 지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제고위한 방안 필요</li> </ul>
비공개 범위축소 등 행정정보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하여 법률이나 법률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조례 등에 의하 여만 비공개대상 정보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 강화(법 제9 조제1항제1호 및 제6호)</li> </ul>

	<p>※ 현행 법은 정보공개법이라기보다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법의 성격이 강하여, 정보공개가 문제없는 내용도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정보공개법의 운영 원칙을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통하여 공개 여부 심사가 되도록 개정 필요</p>
<p>시민감사관제도 확대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부천시 ‘부천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 제정</li> <li>- 업무는 신고, 건의 등 제한적인 활동에 국한</li> <li>- 현재 부천시, 춘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 자치단체수준에서 운영</li> <li>- 환경부, 시민환경감사관제 운영(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6.8.21. 환경부예규 제281호)</li> </ul> <p>※ 시민감사관 혹은 옴부즈만 등의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외부적, 독립적 기능 수행은 제약되고, 대부분 자문, 명예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p>
<p>인사청탁 배제 등 인사시스템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중</li> <li>- 인사청탁등록시스템 개발 및 활용(2011 시범실시 10개 기관)</li> </ul> <p>※ 공직윤리의 핵심적 기반이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탁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인되고 이에 기초한 공직윤리, 청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 방안을 권익위 주도로 마련 필요</p>

### 5-1-2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7. 제도개선 권고 관련 규정 강화하여 위원회의 재심의권 확보</li> <li>- 2005. 7.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규정 신설(제20조의2)</li> <li>- 2002-2011년 기간 동안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안 1347건으로, 2002년 28건에서 2011년에는 204건으로 급증</li> <li>※ 제도개선은 권익위의 전정부적 공직사회 청렴제고를 위한 핵심기반 활동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이행체계 확보 및 부처별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체계 통한 이행력 제고 등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 필요</li> </ul>

### 5-1-3. 공직사회 윤리관 확립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7. 24. 부패방지법 제정, 공무원행동강령제정 근거 마련</li> <li>- 2003. 2. 18.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시행</li> <li>-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제정하여 활용</li> <li>※ 여전히 강령 준수 인식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권익위 표준강령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별 특정, 핵심직무 특화된 행동강령 제정으로 활성화 강화</li> </ul>

공직자 반부패 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직장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기관별 자율적 실시</li> <li>- 2011년, 권익위 11개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개설, 연인원 15,273명 교육</li> <li>- 2011년 기준 위원회 사이버 교육 45회 실시 21,099명 교육 이수</li> <li>- 2002년도 이후 매년 부패인식도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일반국민 56.7, 공무원 2.9로 큰 편차 존재</li> </ul> </li> </ul> <p>※ 공무원-국민간 인식차 좁히기 위한 전략개발 필요</p> <p>※ 공직자 대상 반부패 의무교육의 제도화 필요</p>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6.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 도입</li> <li>- 2007. 6.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li> <li>- 2011. 7.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9인에서 11인으로, 민간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강화</li> </ul> <p>※ 현 제도는 재산등록의 정확성 확보에 있으며, 공직윤리 확보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위한 법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위한 도구로 활용되도록 함</p>

5-1-4 기관별 부패방지 역량 강화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기관별 자체감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감사부서장 개방형 임용,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li> <li>- 감사인력의 기관간 교류, 지방공무원 감사직렬 도입은 아직 미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기관의 경우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적극적 대응 시도</li> <li>※ 공감법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의 실효성 미흡하다는 점에서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 필요. 여전히 독립성, 전문성 확보 미흡</li> </ul>
기관별 윤리위험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부패방지법 제정시 공공기관에 대해 부패방지위한 개선노력 규정</li> <li>- 기관별 직무상 부패발생 가능성 등 윤리위험성 분석 자율적으로 실행</li> <li>- 2005. 7. 부패방지법 개정하여 부패방지 영향평가제도 시행</li> </ul>

5-1-5 비위 공직자 적발, 처벌 실효성 확보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부패신고 및 국민적 감시기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개정하여 규칙 제정 당시 미비되었던 감사청구인원 300인 이상으로 규정</li> <li>※ 청구된 감사에 대한 기각 사유 등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운용실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li> </ul>
신고된 부패행위 처리 확실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부패방지법 개정하여 조사 연장시 연장사유만을 위원회에 통보하던 것을 연장기간도 통보하도록 규정 개선</li> <li>- 2007. 6. 부패방지법 개정하여 당초 제한이 없던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정</li> <li>- 2005. 7. 부패방지법 개정하여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호기능 강화</li> </ul>
부패공직자 거부 풍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li> </ul>

	<p>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까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사면법 개정하여 사면심사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설치하여 운영</li> <li>- 2011. 사면법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 관련 공개 범위 명확화</li> </ul> <p>※ 사면법 개정 및 사면심사위 구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면권 남용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 논의 필요</p>
--	---

## 5-2. 사법부문

5-2-1 부패행위 처벌의 엄정성 및 형평성 확립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부패행위자 형사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를 일선 판사에 요청</li> <li>- 2006.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등 뇌물죄의 가중처벌기준 세분화 및 강화</li> <li>- 2008. 12 ‘특가법’ 개정하여 공무원 범죄와 관련한 수뢰액에 대해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규정 신설</li> <li>- 2002년 공무원 부패사건 중 기소율 25.71%에서, 2010년 89.18%로 증가</li> </ul>
양형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11. 사개위 양형자료조사제도 도입 등 양형제도 개선안 제시</li> <li>-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li> <li>-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제시. 뇌물죄의 경우 감경요소를 고려해도 실행이 선고되도록 기준 설정</li> <li>- 뇌물죄에 양형기준제 처음 적용된 2009년 하반기 뇌물수수 공직자의 평균형량 징역 1.19년에서 2010년 징역 1.83년으로 약 54% 증가</li> </ul>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5. 대통령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방안 마련 지시</li> <li>- 2004. 11.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및 회기종료로 폐기</li> <li>- 2010. 4. 민주당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li> <li>※ 검찰권 견제, 사정기관 비위 공직자 대응, 권익위 권한의 재정립 등 국가 전반적인 사정체계 재정립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논의 필요</li> </ul>

5-2-2 사법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사법절차 공개, 참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2004년 대법원 사개위, 국민참여를 사법개혁의 주요의제로 선정</li> <li>- 2007.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li> </ul>
검찰 소추 재량권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부패방지법 제정시 권익위의 재정신청 권한 규정</li> <li>- 2009. 재정신청 결정사건 5,199건 중 82건 인용(인용률 1.6%)</li> <li>※ 권익위의 실질적 권한 미비로 재정신청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권한 재정립과 연계하여 논의 필요(4-2-1 과제 연계)</li> </ul>

5-2-3 법조인사 공정성, 민주성 제고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검찰 인사 중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7. 10.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정- 자문기구 인사위원회 설치</li> <li>- 2002. 2. 규정 개정하여 7-9인 위원중 민간인 2인 포함</li> <li>- 2004. 8. 규정 개정하여 위원회에 심의권 부여</li> <li>- 2012. 1. 검찰청법 개정하여 기존의 대통령령에 있던 검찰인사위원회 규정을 검찰청법에 포함하도록 하고, 11인의 위원중 비법조인이 4명이 되도록 함</li> </ul>
주요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7. 국회법 65조의2(인사청문회) 개정하여 종전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까지 인</li> </ul>

	<p>사청문 대상 확대함</p> <p>※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동의 필요로 하지 않는 등 현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에서 인준 청문회로 강화 필요</p>
--	--

5-2-4 법조주변 비리유발 환경 개선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법조계 윤리의식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 5. 대법원규칙으로 ‘법관윤리강령’ 제정 : 사법권 독립의 수호, 품위 유지, 공정성 및 청렴성 등 규정하였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며 실질적 구속력 없음</li> <li>- 2004. 12.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윤리 확립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 건의</li> <li>- 2007. 1. 변호사법 개정하여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규정 구체화함. 법조윤리 위반 사건의 수사의뢰 등 규정</li> </ul>
전관예우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4. 29. ‘변호사법’ 개정 : 법관, 검사, 군법무관,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 처리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 금지</li> </ul>

5-2-5 사정기구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사정기구 비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위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적 제도적 장치 없음</li> <li>※ 사정기관의 비위 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통제장치 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논의 필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 시, 사정기구 비위 공직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안이 제시됨</li> </ul>
사정기관 활동에 국민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적 제도적 장치 없음</li> <li>※ 사정기관 활동에 대한 국민참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 필요</li> </ul>

5-3. 정치부문

5-3-1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국민경선제 등 상향식 공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야당 공직후보자 추천시 상향식 공천방식을 당헌에 규정</li> <li>-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출관련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 않음</li> <li>※ 상향식 공천, 국민경선 등 기존의 공선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후보자 관련 부분도 공영선거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li> </ul>
정당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정당법 개정 통해 지구당 폐지</li> </ul>
저비용 선거풍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선거법 개정 이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모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실시</li> <li>- 2004.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 신설</li> <li>- 2004. 4.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설정</li> </ul>

5-3-2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선거비용 지출 등 회계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3. 정치자금법 개정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되, 지출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법 제22조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3. 정치자금법 개정하여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 품의·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신설(법 제22조의4)</li> </ul>
<p>불법 정치자금 적발, 처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7조 1항) 개정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 검찰총장·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li> <li>- 2006.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공개의 소명 이외에도 재산형성과정을 포함함</li> </ul>
<p>기업의 불법적 정치자금 제공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3. 정치자금법 개정하여 국내외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개정</li> </ul>
<p>정치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3. 정치자금법 개정하여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조항 신설 :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됨</li> <li>- 그러나 16대~18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사례 중 47%가 비리혐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등 의원 부패문제에 대한 의회</li> </ul>

	의 자율적 통제에 한계 ※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 전반적인 윤리관리체계의 강화에 대한 논의필수
--	--

5-3-3 정치활동 공개, 윤리규정 강화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국회운영 투명성	- 2005. 4. 국회방송 개국
국회윤리규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7. 국회법 개정(제40조의2)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 규정 신설</li> <li>-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991)있지만 선언적 내용으로 구성</li> <li>- 199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2010. 5.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 미확보</li> <li>- 15, 16대 국회의 경우 처리안건 및 가결건수 미미</li> <li>- 17대 총 82건 접수중 42건 처리, 가결 17건</li> <li>- 징계의결시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정도임</li> <li>※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윤리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구체적 안 마련필요</li> </ul>
입법청원 등의 적극적 처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논의 없음</li> <li>- 17-18대 국회중 704건 입법청원됨. 이중 7건이 채택됨</li> </ul>

### 5-3-4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국민참여, 책임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의 수행</li> <li>- 투명사회협약,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등 통한 인식 제고 활동</li> </ul>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 관련 규정 구체화</li> <li>- 2005. 1. 지방자치법 개정하여 주민소송제 신설(13조의5)</li> </ul>
공직후보자 부패기록 공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8. 공직선거법 개정하여 선거공보물에 후보자의 죄명과 형, 확정일자 등을 공지하도록 함</li> </ul> <p>※ 현행법에서는 금고이상 형에 대한 기록만 대상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강화하자는 의견 다수</p>

#### 5-4. 기업부문

5-4-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회계 투명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규정 신설: 회계정보 관리 등</li> <li>- 또한 회계정보와 관련한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감면, 보호조치 등 규정 신설</li> </ul>
기업 공시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공시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li> <li>- 금융감독원 2002. 7. DART(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통하여 통합공시서비스 시행</li> <li>※ 공시의 적정성 점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 논의 필요</li> </ul>
비자금 조성 억제, 부당 카드 사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국고금관리법 개정하여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국고금관리법 제24조)</li> <li>- 2007. 10. 국가청렴위,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제도개선 권고</li> <li>- 2008. 4. 권익위,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과 세출예산 집행지침 마련 제시</li> </ul>

5-4-2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외부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신설(제11조의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li> <li>- 2009. 3. 동법 개정하여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정(제19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에게 입찰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li> </ul>
내부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10.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국회 제출</li> <li>- 2011. 9.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li> </ul>

5-4-3 기업 윤리경영 확립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기업 윤리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6. 부패방지 및 기업윤리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정보 수집, 위원회내 기업윤리센터 개설</li> <li>- 2005. 4. 공기업 윤리경영협의회 구성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li> <li>- 2006. 기업 윤리경영 모델 개발, 보급</li> <li>- 2007. 기업 투명성 진단모형 개발 활용</li> <li>- 2008. 윤리경영 표준보고서 개발 및 보급</li> </ul>
부패기업 처벌 강화	- 특이 제도개선 사항 없음

5-4-4 공기업 부패유발요인 개선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지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임원선임과정의 투명성 확보위한 규정 마련: 임원추천위원회의 활용 등</li> <li>-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li> <li>※ 그러나 여전히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 등 개선된 지배구조에 걸맞지 않는 임원선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업무상 책임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li> </ul>

<p>인사투명성 제고 및 행동강령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9. 권익위 40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자율적 제정 권고</li> <li>- 2005. 7. 부패방지법 제8조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공무원에서 공직자로 확대하도록 규정</li> <li>- 2006. 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제정</li> <li>- 2008. 12. 3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표준안)이 포함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전면 개정</li> <li>- 2005. 임원선임과정 투명성 제고 및 부패통제 역량 강화 개선방향 등에 대한 권고안 제시</li> <li>- 2007. 공운법 제정으로 인사투명성 등 지배구조 개선안 반영</li> </ul>
<p>회계 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회계의 처리 및 공정계약 위반 가능업체의 제한에 대한 규정 마련(39조)</li> <li>- 또한 경영공시제도 및 통합공시제도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li> </ul>

5-5. 시민사회, 국제협력 부문

5-5-1 반부패 윤리기반 확립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사회전반 윤리규범 확립(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9. 위원회 권고로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자율적 제정·시행</li> <li>- 2005. 7.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공직자로 행동강령 확대</li> <li>- 2006. 4. 모든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내부 규정으로 제정</li> <li>- 민간부문의 경우 자율적 시행의 단계</li> <li>- 2010. 11.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li> <li>※ 강령 제정 권고 이후 기존의 선언적 규범보다 진전된 형태의 의원 윤리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가 증가하였지만, 내용상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내용 및 적용상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필요</li> </ul>
기업윤리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2. 기업윤리경영 모델 개발 및 보급활동</li> <li>- 2005년부터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행으로 윤리경영 논의 주도</li> </ul>
투명성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2007 공직자-학자-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투명성 포럼 운영하여 부패방지 관련 이슈개발 및 논의 확산</li> </ul>

5-5-2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 실시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반부패 청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청렴교육전문가 과정 개설하여,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으로 청렴핵심 요원 양성: 2011년 22개 과정 2793명 이수</li> <li>- 청렴교육 사이버 과정 운영: 2011년 311,832명 수료</li> <li>- 청렴교육 강사풀 운영: 2002년 75명→2009년 129명</li> <li>-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2011년 현재 36개교</li> <li>- 대학생 청렴홍보단: 2011년 총 19팀</li> </ul>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p>&lt;공직자 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공직자 청렴교육용 표준 PPT 개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영상물(아 름다운 선택)</li> <li>- 2009년: 공직자용 청렴드라마(행복을 주는 사람)</li> </ul> <p>&lt;일반국민 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일반국민용 영상물(선물), 청렴韓세상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청렴송 활용</li> <li>- 200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TV 공익성 캠페인 광고, 전국반부패 청렴 웅변대 회 개최</li> </ul> <p>&lt;학생 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초등학생 대상 청렴교육콘텐츠(좌충우동 뭉치네 집), 중고 학생 청렴교육 콘텐츠(카툰, 게임 등)</li> <li>- 2010년: 중고등학생 청렴교육 교재, 학부모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등</li> </ul>

5-5-3 국민 참여 통한 반부패 홍보 강화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일반국민 청렴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공모사업 등 통하여 청렴문화 확산활동</li> <li>- 청렴한 세상 좋은 글짓기 대회</li> <li>- 청렴인물 문화탐방</li> <li>- 뉴미디어 청렴 콘텐츠 공모전(UCC, 웹툰 등)</li> </ul>
시민단체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노력(2007-25개 지역에 구성): 지역 시민단체 중심의 부패방지신고센터 개설, 운영</li> <li>- 공모제 사업 통하여 지역시민단체의 반부패 활동 지원</li> <li>- 2005. 3. 투명사회협약 지원(공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확산)</li> </ul>

5-5-4 반부패 국제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과제 내용	과제 추진상황
반부패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국제반부패기구(ACA) 포럼 창설 주도</li> <li>- 2004. 동남아 국가 대상 반부패 워크숍 개최</li> <li>- 2005.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움</li> <li>- 2006. 한-인니 부패방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li> <li>- 2006. 아시아 국가 공무원 대상 교육</li> <li>- 2008. 개도국 대상 부패방지 기술지원 사업 수행</li> </ul>
국가이미지 제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외국기업 대상 홍보(영문 홍보물, 방송광고 등)</li> <li>- 국제기구 참석하여 부패방지 활동 홍보</li> <li>- 주한 외국인 대상 정책 설명회 등</li> </ul>
반부패관련 국제행사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5. 서울 반부패 세계회의(IACC)-서울 권고문 등 채택</li> <li>- 2005. 6. 반부패 글로벌 포럼 참석 등</li> </ul>

## 6. 부패방지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성과 등 분석

### 1) 과제의 범위

- 행정부문 이외에 정치, 경제, 사법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 포함한 포괄적,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전정부적 기본계획 수립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 특히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최초의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부문별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었음. 다만 과제별 구체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함. 즉 거시적 수준의 과제와 미시적 수준의 과제가 동시에 존재함.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부패방지 관련 문제와 정책의 특성, 그리고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의 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향후 부문별로 충분한 분석 등에 기초한 균등한 수준의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다만 부문별 과제들 간에 연계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같은 연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를 반영한 계획안의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서 엄정한 처벌의 경우 일반행정과 사법부문 모두 포함되는 과제이지만, 이들이 각각 논의되고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이를 고려한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추진주체 및 방식

- 기본계획에서는 원론적으로 정부-기업-민간부문 등 다자간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부패문제의 기본적 속성과 과

데의 다양성, 다양한 부처들간에 연계된 정책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추진주체의 제시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적절한 방향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핵심 추진주체를 명확하게 설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물론 이것은 당시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이를 체계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기인하는 바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추진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패방지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07년까지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 등과 같은 추진방식을 통하여 정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일정한 성과도 확보하였지만, 모든 과제를 이를 통하여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음
-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투명사회협약, 민간협력 등 다양한 민-관 협력 방식을 활용하였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이와 같은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당초의 기본계획에서와 같은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와 협력방식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음. 부패방지 정책의 특성과 시민사회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보완이 향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3) 성과관리 방식

- 기본계획에서는 3단계별로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계획 추진의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일부 과제의 경우 목표의 명확성이 다소 모호한 경우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목표의 제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단계 등의 제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향후 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기본계획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제시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 및 TI 순위를 제시하였음.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과 기존에 알려져있던 TI-CPI를 활용하는 것은 인정됨. 다만 이들만 갖고 기본계획의 목표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부문별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었지만, 다수의 과제들이 추상적 수준에서 언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 혹은 확인하기 위한 지표 구체성은 미흡함. 이것은 결국 과제별 추진방향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 이후 과제의 추진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점에서, 향후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추진성과의 분석

- 기본계획의 추진에 따른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여기에서는 성과의 유형, 성과 확인 가능성 등 성과관리체계의 측면과 과제의 최초 개선시기, 과제의 목표 달성도 등 성과관리 측면에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였음(※ 법, 제도와 관련된 관련성이 적은 일부 과제는 미포함하여 전체과제수보다 적음)

	성과의 유형			성과 확인 가능성		최초 개선 시기			목표 달성도		
	신규 법, 제도 도입	기존 법, 제도 개선	정책 도입 등	성과 확인	성과 확인 어려움	2005년 이전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충분	약간	미흡
일반행정	7	6	1	7	7	10	3	1	4	8	2
사법부문	5	7	0	8	4	4	5	3	0	8	4
정치부문	1	10	1	6	6	9	2	1	0	10	2
기업부문	2	5	1	4	3	1	3	4	0	7	1
시민사회	1	0	3	2	2	3	1	0	1	3	0
국제협력	0	0	1	0	1	1	0	0	0	1	0
계	16	28	7	27	23	28	14	9	5	37	9

(1) 연도별 부패방지 과제 관련 주요 법령 제정 현황

○ 연도별로 새로 제정된 주요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부문	연도별 제정된 법률
일반행정부문	2003 부천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 2003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2006 환경부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200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4급 이상 성과계약) 200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010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201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10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사법 부문	2007 양형위원회 규칙(양형위원회 설치) 200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 부문	20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기업 부문	20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시 강화) 2011 공익신고자 보호법

○ 평가대상기간동안 신규로 제정된 의미있는 대표적 법률로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등 총 13개의 법률이 신규로 제정되어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음. 그러나 의미있는 법령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등은 그 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윤리관련 규정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08년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2) 연도별 부패방지 과제 관련 주요 법령 개정 현황**

- 연도별로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 법령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부문	연도별 개정된 법률
일반행정부문	2004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적 관리 및 민원신청) 20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비공개 정보 기준 강화) 2005 공무원 임용령(인사원칙 및 기준 공개) 2005 부패방지법(제도개선 권고 강화) 2005 부패방지법(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검토) 2005 부패방지법(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200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1회방문 처리제) 20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구성) 2007 공직자윤리법(고지거부제도 개선) 2007 사면법(사면심사위원회)

	<p>2010 공무원 임용령(과장급 역량 평가)</p> <p>2011 공직자윤리법(민간위원 구성 강화)</p> <p>2011 사면법(사면심사위원회 공개 범위 강화)</p>
사법 부문	<p>2003 검찰인사위원회 규정(외부 인사위원수 등 강화)</p> <p>2004 검찰인사위원회 규정(검찰인사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p> <p>2005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 대상 확대 및 절차 강화)</p> <p>2006 법관윤리강령(대법원 규칙, 법관 윤리기준 강화)</p> <p>2007 변호사법(법조윤리협의회 설치)</p> <p>2011 형사소송법(재판기록의 전자적 열람)</p> <p>2011 변호사법(전관예우 제한)</p>
정치 부문	<p>2004 정당법(지구당 폐지)</p> <p>2004 공직선거법(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p> <p>2004 공직선거법(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강화)</p> <p>2004 정치자금법(정당재정 회계책임자 규정 강화)</p> <p>200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 위반 정보제공 강화)</p> <p>2005 국회법(국회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p> <p>200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강화)</p> <p>2005 지방자치법(주민소송제 도입 주민감사청구 개선)</p> <p>2006 공직선거법(공직선거후보자 재산취득 경위 등 재산등록 관련 규정 강화)</p> <p>2012 정치자금법(회계처리 규정 강화)</p>
기업 부문	<p>200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인 관련 규정 강화)</p>

	20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비상장사 공기 강화) 2005 부패방지법(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2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 방지) 20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공시) 2009 상법(사외이사 선임규정 강화) 20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사외이사 등 지배구조 개선) 2010 은행법(지배구조 내부규범) 2010 은행법(감사위원회 설치) 2011 상법(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 2011 국고금관리법(관서운영경비 지출방법 강화) 20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경영공시 강화)
--	--

- 평가대상기간동안 개정된 법령은 제정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남
-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사면법, 공직선거법 등 주요 법률들을 중심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이외에도 다양한 법령이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개정, 강화되었음
- 상당수의 과제들이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짐으로서, 현정부의 부패방지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3) 연도별 부패방지 과제 관련 정책 도입 등 기타 활동

○ 연도별로 이루어진 부패방지 관련 도입, 시행된 주요 정책 등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부문	연도별 도입된 주요 정책
일반행정부문	2002 통합조달시스템 도입 2006 국민신문고제 도입 2011 인사청탁 등록 시스템 도입 2012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
사법 부문	2004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양형제도 개선안 2004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2010 민주당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정치 부문	2004 국회방송 개국 2005 선거 매니페스토 운동 2005 투명사회협약 2006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출범
기업 부문	2002 공정공시제도 2006 맞춤형 청렴컨설팅(국가청렴위원회)
시민사회, 국제협력	2003 반부패국제회의 2007 반부패 전국 네트워크(국가청렴위원회) 2007 부패방지시민센터

	2007 청렴교육 사이버 과정 2008 청렴교육 연구학교 2010 국제반부패 아카데미 총회 참여
--	---

- 부패방지기본계획상 대부분의 과제들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된 것들이며, 이에 따라서 법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정책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안이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시민사회,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졌음. 이와 같은 정책들은 상당수가 2008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음

## 7. 향후 중장기 부패방지기본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

### 1) 정책 여건의 변화 반영

- 『부패방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2002년과 10년이 경과한 2012년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향후 계획은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2002년과 2012년의 관련 환경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표에 정리된 내용은 고려될 수 있는 각 영역의 주요 특징들을 비교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구분	2002	2012
경제적 환경	-경제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의 하나로서 부패문제 강조 -기업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	-경제위기(실업 등 특히 강조) -경제위기와 부패문제의 연관성 인식 미흡 -기업 부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완화
정치적 환경	-부패방지 강조하는 정권의 출범 -대통령 등의 반부패문제에 대한 인식 높음	-부패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족 -경제문제가 부패문제에 우선하는 분위기 -정권말기 권력형 부패의 노출 가능성 증대
시민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 -시민단체간 연대 통한 부패방지 활동 수행	-주요 시민단체의 부패문제 인식은 상존 -시민단체간 반부패 연대활동은 제한적
법적 기반	-부패방지법의 제정 -권력형 부패에 대한 강한 처벌의 기대	-부패방지법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 증대 -적발,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전담 조직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높은 불신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높은 불신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	-부패방지조직 위상의 취약성 문제 제기 -부패방지조직 기능, 권한 강화 요구 증대
관련 정책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부패방지 관련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추진	-부패방지 관련 신규 정책 개발의 한계 -부패방지 관련 정책의 존재인식 미흡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불신 증대
부패인식	-부패의 심각함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존재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의 저조 -정권 임기에 초점을 둔 언론의 부패보도 -개선되지 않는 부패인식지수(TI-CPI)

## 2)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 (1) 포괄 범위의 문제

- 2002 부패방지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문만 아니라 타영역까지 포괄한 종합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부처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임
- 또한 부패문제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결합된 가운데 발생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2) 추진력 확보의 문제

- 2002 부패방지기본계획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과제에는 한계가 있음. 대다수의 과제들이 타부처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타부처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의 총괄조정 권한 등의 확보가 중요함.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조정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정책의 효과적 추진은 어렵기 때문임
- 예를 들어서 2007년까지 활용하였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확보가 필수적임.

### (3) 성과지표 등 통한 체계적 성과관리의 필요

- 부패방지 관련 계획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방지 과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과정과 추진성과 등을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명확한 성과지표는 효과적 과제관리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지표가 존재함으로써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환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4) 과제간 연계성 확인 통한 과제의 모듈화, 전략화 필요

- 기본계획이 다양한 부문을 포괄함에 따라서 과제의 전략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계획안에는 다양한 영역의 과제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들간에 상호 연계성이 존재하는 과제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유사하거나 중복된 과제들이 다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다수 과제들간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획에 포함되는 과제들 간의 모듈화, 전략화가 필요함. 이를 통하여 과제의 정렬은 물론 효과적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 최소한 중점, 핵심과제를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3) 우선적으로 고려 가능한 과제

-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과제들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2002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할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다음에 제시된 과제들은 2002년 계획 추진 이후 정부 및 시민사회 등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과제들을 일부 예시한 것임.

과제	주요 내용
시민옴부즈만(시민감사관)	법제화 노력
정보공개법	비공개 범위의 축소
인사청탁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탁등록시스템 활성화

인사평정시 청렴도 반영	청렴도 반영한 인사평정모델 개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확산	지방의회별 확산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정	윤리강령 내실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법제화
윤리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승진 등에 윤리교육 이수 의무제 도입
의회 행정감사기능 강화	의회 행정감사 전문성 확보
부패공직자 사면 억제	사면법 개정하여 엄격화
부패공직자 양형실태 DB화	양형의 엄격성, 균형성 등 분석
공기업 감사제도 개선	감사의 자격 등 강화
공직윤리-부패방지 일원화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직 인사검증법 제정	인사검증의 기준과 절차 등 규정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록재산과 직무간 이해충돌 심사
권익위 위상 강화	실질권 권한의 확보
인사청문회 강화	인증 청문회로의 강화



---

## 1. 일반행정 부문

---

1-1 행정의 투명성 제고

---

1-2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

1-3 공직사회의 윤리관 확립

---

1-4 기관별 부패방지 역량 강화

---

1-5 비위 공직자에 대한 적발, 처벌 실효성 확보

---

---

## 1-1 행정의 투명성 제고

---

1-1-1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등 민원처리 투명화, 간소화

---

1-1-2 계약과정 등에서의 부패방지

---

1-1-3 비공개 범위 축소 등 행정정보 공개 확대

---

1-1-4 시민감사관제도 확대 시행

---

1-1-5 인사기준 공개 및 인사청탁 배제 등 인사시스템 확립

---

[1-1-1] 민원처리 투명성, 간소화 등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1. 행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처리 과정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처리 절차, 복잡성, 대민접촉 부문 등 관련 영역을 포괄한 계획의 마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종류의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투명성 제고 관련 지표는 제시하지 않음</li> </ul>		
관련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li> </ul>		
과제별 성과	<p>[1] 민원신청방법 개선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7. 8. 2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당시에는 민원의 신청은 '문서' 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li> <li>2002. 3. 25. 개정하여 종이문서 이외에 '전자문서' 로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개정함</li> <li>2006. 6. 법개정하여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시행</li> <li>2011년말 기준 민원 24시 통하여 3,013종 신청, 1,191종 발급 가능</li> <li>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 공개화: 서울시 1999년 처음 도입 이후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으로 이젠 보편화된 시스템으로 정착</li> <li>중복 서류 및 과다 서류 요구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감소방안 마련 필요</li> </ul>		

[2] 국민신문고제도 도입 및 활성화

- 2005. 시범운영 및 통합작업 시작
- 2006. 7. 중앙행정기관 민원창구 통합 완료
- 2008. 국방부 산하 38개기관 민원시스템 통합
- 2010.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시스템 통합
- 국민입장에서의 효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과 활용 가능
-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2005. 12일 → 2010. 6일로 단축
- 국민신문고 통하여 민원 처리 전과정 조회 및 실시간 확인 가능
- 국내외 우수 전자정부 사례로 수상 등 국제적 인정받음

[1-1-2] 계약과정 등에서의 부패방지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1. 행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투명한 계약과정과 과도한 수의계약 등으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축소 및 전자입찰제 확대 등 계약관련 문제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점에 인식하여 계획안을 제시</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제도의 도입 및 전자입찰제의 단계적 확대안 등 구체성이 미흡한 계획안을 제시</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입찰제, 청렴서약제</li> </ul>		
과제별 성과	<p>[1] 전자입찰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말 기준 전체 402,435건 입찰공고 중, 전자입찰은 288,533건</li> <li>• 2003년말 기준 전체 140,000건 입찰공고 중, 전자입찰은 99,020건</li> </ul> <p>[2] 통합 조달정보시스템 도입(G2B): 나라장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10. 개통</li> <li>• 2003. UN 공공서비스상 수상</li> <li>• 연간 75조원이 KONEPS를 이용하여 거래</li> <li>• 매일 20만명 이상 거래(2003년 15만명)</li> <li>• 개도국에 시스템 수출</li> </ul>		

[3] 청렴서약제 도입 확대

- TI(국제투명성 기구)에 의하여 1990년대 제안된 이후 각국에서 실시
- 서울시 2000년 7월 '청렴계약제' 실시 시작(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 도입하여 활용)
- 2000. 9.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 제정(2008년 폐지)
- 2008. 4.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로 대체
- 현재 대다수의 공공발주 기관에서 청렴계약제 활용(규칙 등으로 제정하여 활용)

[1-1-3] 비공개범위 축소 등 행정정보 공개 확대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1. 행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 대상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내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의 충실한 기록과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확보가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식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 및 공시 강화, 정보 접근성, 비공개 대상 정보의 축소 등 관련 내용의 개선을 계획안에 포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인 내용과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i> <li>정보공개법</li> </ul>		
과제별 성과	<p>1) 기록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9.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 1. 시행령 개정 통하여 전자적 기록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li> <li>2004. 3. 시행령 개정 통하여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함</li> </ul> </li> <li>200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법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존 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법으로 대체 입법함</li> <li>기존에 없던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과 관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li> </ul> </li> </ul> <p>&lt;주요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i> </ul>		

-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사항
-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 제31조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관리) ①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2) 정보공개

- 199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2004. 7. 비공개 정보 관련 규정의 강화 :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조례 등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비공개대상 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법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
  - 2007. 1.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③)
  - 2008. 2.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하는 개정안을 시행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였던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상을 정립한 것이었는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됨으로서 법 제정시와 비교하여 위상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1-1-4] 시민감사관제도 확대 시행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1. 행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리 과정에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처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 전문가 참여 일반적 내용만을 언급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감사관제’ 라는 명칭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타 사항은 종전에 논의되던 일반적 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관련 법은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규칙,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등 통하여 관련 근거 마련</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민감사관제는 주로 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되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활용함</b> -현재 부천시, 춘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에서 제정하여 활용함</li> <li>• 부천시 2003. ‘부천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 제정 -업무는 신고, 건의 등 제한적인 활동에 국한</li> <li>• 환경부, 시민환경감사관제 운영(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8. 21. 환경부예규 제2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li> </ul>		

– 제3조(지위) ① 시민환경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위를 가진다

1. 환경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환경부 감사반원으로서의 지위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주민감사청구나 다수인관련 민원,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조사 또는 중재 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지위

–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시민환경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환경관련 각종 비리,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 제보 및 정책사항 건의
2.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
3. 환경부장관이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주민감사청구나 다수인관련민원,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등에 대한 조사·중재 및 해결방안제시

– 제7조(조사 또는 중재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중에서 고질적·반복적민원 등 시민옴부즈만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민옴부즈만을 지정하여 조사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2. 지방자치법 제13의4 제1항에 의한 주민감사청구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
4. 감사원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민감사관제의 경우, 당초의 논의는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 직접적 참여를 통하여 참여

	<p>민주주의의 실현과 더불어 행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음.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시민감사관제를 실질적 의미보다는 명예직 정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 의미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앙부처로서 환경부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질적 성과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li></ul>
--	--

[1-1-5] 인사기준 공개 및 인사청탁 배제 등 인사시스템 확립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1. 행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내부의 부패문제의 핵심의 하나로서 인사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문제인식에 기초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기준, 인사평정절차와 과정 공개, 인사청탁 배제 등을 언급하여 인사관리상 부패관련 핵심문제 등을 제시</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기준의 마련, 인사평정 절차와 결과 공개,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인사청탁 배제 등에 대한 원론적 수준에서의 방안 제시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법</li> <li>• 공무원임용령</li> <li>•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li> </ul>		
과제별 성과	<p>[1] 국가공무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인사 관련 일반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의 개정이 없었음</li> </ul> <p>[2] 공무원임용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2. 공무원임용령 개정하여 각 부처에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 을 미리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영 제5조의 2)</li> <li>- 제5조의 2(인사원칙의 사전공개)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li> </ul>		

- 2010. 6 **과장급 역량평가**의 관련 규정 마련(영 제10조의 3)

-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2006. 1.)

-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평가를,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으로 제도화하여 기존의 공무원 평정규정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함

[4] 인사청탁등록 시스템 도입

- 인사청탁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에 등록하도록 하여 부당한 인사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운용
- 2011년말 기준으로 약 303개 기관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임

[5] 인사청탁 방지 등 위한 법률안 제정 추진

- 인사청탁 등 공직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부당한 청탁, 이권개입, 이해충돌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가칭)’을 제정 추진중임
- 토론회(2011. 11, 2012. 2),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2012년중 법안 통과 추진중

---

## 1-2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

1-2-1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체계 마련 등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

[1-2-1]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체계 마련 등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2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함으로서 근본적으로 부패방지를 하겠다는 점에서 적절한 문제인식임. 이를 통하여 단기적,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 안정적 부패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인식, 접근방법, 추진체계 등 제도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분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에 비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 개선의 방향, 업무 흐름도 분석을 통한 부패취약분야의 파악 및 제도개선안 마련, 부패방지 위원회와 관련 부처간 업무협력 방안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과제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법</li> </ul>		
과제별 성과	<p>[1] 부패방지법상의 제도개선 관련 규정 마련 및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 1. 부패방지법 제정과 관련 규정의 마련(부패방지법 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li> <li>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li> <li>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li> </ol> </li> </ul>		

- 2005. 7. 제도개선 권고 관련 규정의 강화(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 의하여야 한다.

[2]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검토' 규정 신설(2005. 7)

- 2005. 7.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규정 신설(제20조의2 )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양한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안의 권고

- 2002-2011년 기간동안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안은 1347건으로, 2002년 28건에서 2011년에는 20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건수	38	43	108	193	183	147	110	144	177	204	1,347

---

## 1-3 공직사회의 윤리관 확립

---

1-3-1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확산

---

1-3-2 공직자 반부패 교육 의무화

---

1-3-3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

---

[1-3-1]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확산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3 공직사회의 윤리관 확립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문제 인식에 근거</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강령의 제정 필요성과 일부 포함내용만을 제시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언급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권개입, 이해충돌 금지, 선물과 경조금 수수 제한 등 일부 행동강령에 포함될 내용을 예시하는데 그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법</li> <li>공무원 행동강령</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근거 마련(2001. 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 7. 부패방지법 제정하여 공무원행동강령제정 근거 마련함. 부패방지법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li> <li>2003. 2.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하여 시행(2003.5.19)</li> </ul> </li> <li><b>행동강령의 공직유관단체로의 확대 적용(2005. 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5. 7. 부패방지법 개정하여 기존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함</li> <li>이를 통하여 정부 공무원에게서 공공기관 등 공직자 전반으로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li> </ul> </li> </ul>		

• **행동강령에 규정될 내용의 명확화(2008. 2)**

- 기존의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행동강령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2010. 11)하여 2011. 2부터 본격 시행**

- 기존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행동강령이 제정되도록 하였으나, 기존의 행동강령이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상의 의원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실질적인 강령제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따라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표준적인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음

-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윤리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1-3-2] 공직자 반부패 교육 의무화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3 공직사회의 윤리관 확립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문제인식의 제기 없이 반부패 교육 강화 및 인식도 평가 등을 제시하였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 교과과정 편성, 반부패 인식평가, 정기적 직무교육, 교재 제작 등을 제시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안은 제시하지 않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법</li> <li>• 부패방지법</li> </ul>		
과제별 성과	<p>[1] 국가공무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패방지 및 청렴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제시되지 않음</li> </ul> <p>[2] 부패방지법상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적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i> </ul> </li> <li>•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서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li> </ul> </li> </ul>		

###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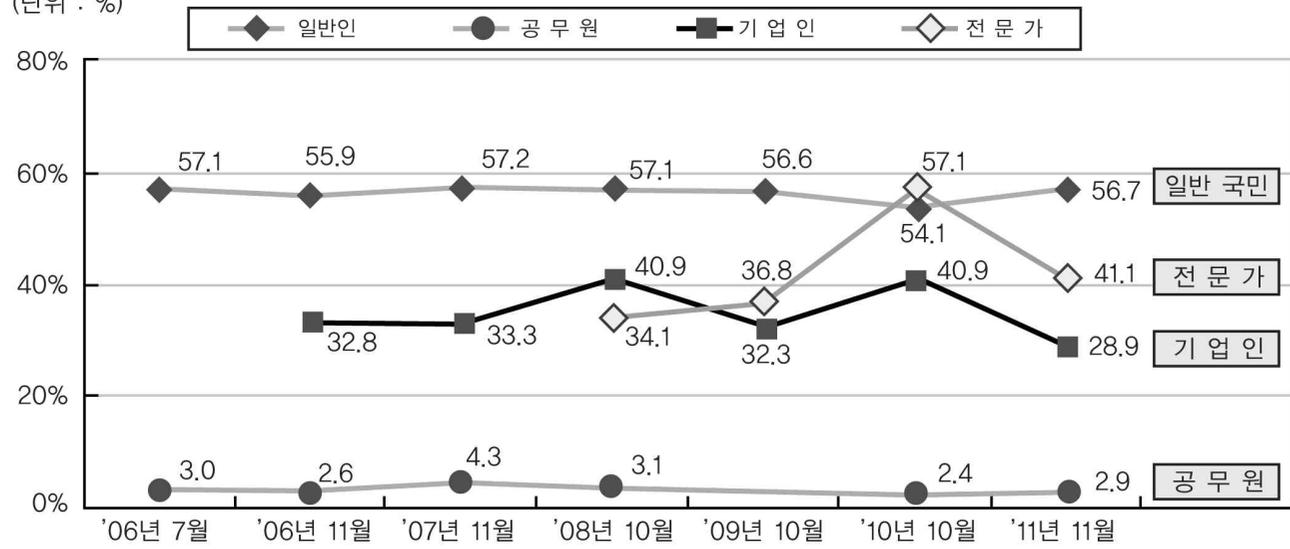
#### [3]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부패방지교육의 실시

- 정기적 직장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교육훈련 실시중임
- 2011년 기준으로 11개의 청렴교육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연인원 15,27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사이버 교육의 실시
- 2011년 기준으로 위원회가 45회 실시하여 21,09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155개 기관이 운영하여 290,73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4] 부패방지 인식도 조사

- 2002년도 이후 매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6. 일반국민의 경우 57.1이 2011년에도 여전히 56.7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에도 3.0에서 2.9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



[1-3-3]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3 공직사회의 윤리관 확립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어 활용되었지만, 규정의 미비 등으로 체계적인 등록은 물론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인식에 근거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지거부제도, 재산형성과정 투명성, 윤리위원회 위원구성, 규정 위반 등 일부 주요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에 일부 문제 제기 되었던 내용의 개선방향만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윤리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윤리법상 고지거부제도 개선(200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3. 법 개정시 고지거부 규정 추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li> <li>2007. 6. 29.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법 제12조제4항) -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등록의무자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고지거부허가를 받도록 함</li> </ul> </li> <li>재산형성과정 투명성 증대(200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 당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고 선언적 규정하고 있었음</li> </ul> </li> </ul>		

- 2007. 6. 29.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의무 등(법 제8조 제13 항 내지 제15항, 제22조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법 제30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하여 등록재산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고,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 민간위원 구성 내실화(2011. 7)
  - 2002.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011. 7. 개정: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

## 1-4 기관별 부패방지 역량 강화

---

1-4-1 기관별 자체감사역량 강화

---

1-4-2 기관별 윤리위험성 분석

---

1-4-3 기관별 반부패 유공자 발굴, 포상

---

[1-4-1] 기관별 자체감사 역량 강화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4 기관별 부패방지 역량 강화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체감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인 식임</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전문가의 감사인력으로의 활용, 감사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우수한 감사인력의 확보 등은 자체감사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적절한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인력의 개방, 감사인력 전보제한, 감사직렬 구성 등 비교적 자세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과 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감사에 관한 법률</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 로서 법령으로서 일부 내용들이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음.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li> </ul> <p>[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2010. 3 제정, 2011. 7 시행)</p> <p>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p> <p>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시행 2010.12.17, 감사원규칙 제222호)

제5조(독립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및 감사·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 |  |  |
|--|--|
|  | <p>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p> |
|--|--|

[1-4-2] 기관별 윤리위험성 분석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4 기관별 부패방지 역량 강화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윤리 위험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근거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과 예방책 강구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계획이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성은 확보되지 않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법상의 선언적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년 법 제정시 이와 같은 취지를 담은 규정을 마련하였다</li> <li>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②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li> <li>따라서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이와 같은 법규정에 근거하여 부패방지기관별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li> </ul> </li> <li>‘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검토’ 규정 신설(200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리 위험성 분석의 명칭과는 다소 다르지만,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였음</li> <li>2005. 7.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규정 신설(제20조의2 )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li> </ul> </li> </ul>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3] 기관별 반부패 유공자 발굴, 포상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4 기관별 부패방지 역량 강화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 과제명 이외의 내용 언급 없음		
계획의 포괄성	• 과제명 이외의 내용 언급 없음		
계획의 구체성	• 과제명 이외의 내용 언급 없음		
관련 법령 및 정책	• 과제명 이외의 내용 언급 없음		
과제별 성과	• 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부패방지 관련 유공자 및 유공기관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음		

---

## 1-5 비위 공직자에 대한 적발, 처벌의 실효성 확보

---

1-5-1 부패신고 및 국민적 감시기능 활성화

---

1-5-2 부패 공직자 거부 풍토 조성

---

[1-5-1] 부패신고 및 국민적 감시기능 활성화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5 비위공직자 적발, 처벌 실효성 확보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 친화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부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부패공직자 신고, 주민감사청구제, 시민감사관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행위의 신고, 주민감사청구제, 시민감사관제를 언급하여 관련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시민감사관제의 경우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하여 과제의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과제를 언급하여, 계획의 구체성은 확보되지 않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법</li> </ul>		
과제별 성과	<p>[1] 부패신고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2011년 기간 동안 22,102건 접수, 월평균 186건 신고</li> <li>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가장 많은 7,382건</li> <li>인터넷 활용한 접수가 전체의 52.3%인 11,571건 차지</li> <li>연도별 신고접수 현황(2011. 12. 기준, 국민권익위원회)</li> </ul> <p>[2] 내부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2011기간 동안 기관에 접수되어 부패행위 조사기관에 이첩한 822건 중 내부신고는 44.5%인 366건임</li> </ul>		

(단위 : 건)

구 분	총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 수	22,102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월평균	186	234	140	147	165	145	212	125	224	258	211

- 이종 결과가 통보된 326건에 대한 혐의적발율은 74.5%로 전체 혐의적발율 70.4%보다 높게 나타났다
- 부패적발로 추정, 환수된 금액은 총 1,102억원으로, 전체 사건의 추정, 환수금액 1,803억원의 61.1%로 나타나서, 내부신고에 의한 부패적발 효과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3]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및 보호조치 실적

- 2005. 7. 부패방지법 개정하여,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 불이익이 예상” 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 강화함
  - 또한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함
  - 기관에 의한 신분보장 조치에 대한 권고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함
  - 내부 공익신고를 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로 보호하는 규정 마련

- 부패신고자의 보호

- 2002-2011년 기간 동안 신고자, 협조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것은 총 127건으로, 연평균 12건 정도임
- 2005년 보호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 103건이 접수되어 전체 요구된 보호건수 중 81%를 차지함
- 신분조장조치를 요구한 사유 중, 신분상 불이익이 94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였으며, 신분유지 상태의 징계가 28건, 파면 등 배제징계가 19건 등으로 나타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

합계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
	소계	파면해임	징 계	기타 인사상 불이익	
107 (100%)	94 (87.9%)	19 (17.8%)	28 (26.2%)	47 (43.9%)	13 (12.1%)

※ 최초 신분보장조치요구 접수 시 불이익 내용

- 2002-2011기간 중 신분보장조치 요구건 107건 중 신분보장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33건임. 33건 중 24건이 원상회복, 5건이 인사교류 등으로 나타났음

(단위 : 건)

연도	합계	신분보장조치					기 각	취 하	종 결	조사중
		소계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책임 감면	인사 교류				
계	107	33	24	2	2	5	17	33	20	4

- [4]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국민감사청구): 감사원에 청구(부방법에도 제정시 규정 됨)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시행 2002.1.25] [감사원규칙 제149호, 2002.1.25. 제정]
  - 제정 당시 감사청구인원 규정 미비: 2008년 개정시 300인 이상으로 규정함
  - 시민감사관제 도입 활성화: 위에서 별도 언급

[1-5-2] 부패공직자 거부 풍토 조성

부 문	일반행정 부문	항 목	1-5 비위공직자 적발, 처벌 실효성 확보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된 부패행위가 엄정하게 처벌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문제에 인식</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의 권한 강화, 신고여건, 확실한 처벌, 취업의 제한 등 기존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포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인식은 명확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소 추상적임</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법, 사면법</li> <li>공직자윤리법</li> </ul>		
과제별 성과	<p>[1] 부방위 신고 부패행위 조사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 법 제정 당시에는 조사가 연장될 경우 연장사유만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지만, 2005년 개정하여 연장사유만이 아니라 연장기간도 통보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최소한의 권한 강화</li> <li>당초 규정이 없던 부패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2007년 6월 개정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정</li> </ul> <p>[2] 신고된 부패사건의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2011년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건 중 22,047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사기관에 822건 이첩,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해당기관에 통보 308건, 공공기관 송부 8,954건 등임</li> </ul>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이 첩	행동강령 위반통보	공공기관 송 부	총 결
신고 처리	22,047	822	308	8,954	11,963

\* 심사 진행 중인 55건 미포함

- 이첩한 사건 중 부패혐의가 적발된 541건 중 기소 1,634명, 징계 1,050명, 고발, 의원면직, 사직 등 38명, 기관주의 107건, 제도개선 조치 38건이며, 추징, 환수된 금액은 1,803억원임
- 이첩된 부패사건은 보조금, 지원금, 공사 입찰 등과 관련한 건이 52.1%로 가장 많으며, 공금횡령 16.4%, 법령위반 6.2% 등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증·수뢰	공금횡령· 유용	배 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 서 위·변조	예산·재정 법령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사기 (편취)
합 계	73 (100.0)	6 (8.2)	12 (16.4)	5 (6.8)	3 (4.1)	1 (1.4)	7 (9.6)	1 (1.4)	38 (52.1)
중앙행정기관	7(9.6)	2	1	-	-	-	-	1	3
지방자치단체	18(24.7)	3	-	4	3	-	7	-	1
공직유관단체	7(9.6)	1	2	1	-	1	-	-	2
민 간 부 문	41(56.1)	-	9	-	-	-	-	-	32

\* 기타는 배임, 비밀누설 등임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 2001. 부패방지법 제정시, 직무상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퇴직후 3년간 업무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협회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로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 ※ 부패방지법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2011년 부패방지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준이 강화됨
- 즉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함(제17조)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2006-2011.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 비위면직자의 경우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부패유형	합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상)
소계	1,779	289	249	267	392	414	168
뇌물·향응수수	1,145	179	154	164	255	274	119
공금횡령·유용	392	71	63	59	88	86	25
직권남용/직무유기	55	9	7	18	8	9	4
문서위·변조	35	2	4	5	16	8	-
기타	152	28	21	21	25	37	20

#### [4] 부패공직자 사면제도 강화

- 사면법은 1948년 제정후 엄정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비판
- 2007. 12. 31. 사면법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설치토록 함
-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2011년 사면법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 관련 공개의 범위 명확화

10조의 2(사면심사위원회)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부방법>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경력세탁 방지

-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li><li>•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제17조)</li><li>•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li></ul> |
|--|---|

---

## 2. 사법부문

---

2-1 부패행위 처벌의 엄정성 및 형평성 확립

---

2-2 사법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

2-3 법조인사의 공정성·민주성 제고

---

2-4 법조주변 비리유발 환경 개선

---

2-5 사정기관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확립

---

---

## 2-1 부패행위 처벌의 엄정성 및 형평성 확립

---

2-1-1 부패행위자 형사처벌 강화

---

2-1-2 양형 합리화 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고려 등

---

2-1-3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강화

---

[2-1-1] 부패행위자 형사처벌 강화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1. 부패행위 처벌의 엄정성 및 형평성 확립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기소율 및 실행률이 낮다는 인식하에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li> <li>• 2010년 9월: 온정주의 처벌시스템으로 인한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공무원 부패행위 반복에도 징계양정보다 낮은 처벌, 봐주기식 낮은 수위의 처벌, 형사 미고발, 징계소청제를 통한 징계감경의 비판 제기</li> <li>•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징계의결로 중징계사항을 주의 및 경계 등으로 끝나는 ‘제 식구 감싸기’ 문제 심각</li> <li>• 징계양정 기준을 무시한 징계감경 사례 만연</li> <li>• 16개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간 징계소청결과의 편차 해소</li> <li>•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미공개</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기소율과 실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현재의 기소율과 실행률에 대한 개선목표에 대한 구체적 수치 제시가 없었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위위원회 백서 2011, 2010 참조</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정기준 과소적용한 경우 재심의 요구(2010)</li> <li>• 반기별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 점검(2010)</li> </ul>		

-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감경 제한(2010)
- 소청심사 상정의안에 징계감경 제한대상 비위임을 명시(2010)
-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감경 제한(2010)
- 부패행위비위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징계 심의·의결(2010)
  -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방지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별 운영규정 마련(2010)
  - 소청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소청심사결과, 주요사례 및 관련통계를 기관홈페이지에 공개(2010)
- 외부위촉위원수 5인 이상으로 하고 외부단체추천에 의해 선발(2010)
-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 강화(2010)
- 부패방지위원회(2002)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출범(2008) 이후 2011년말까지 부패사건은 총 22,102건이 접수되어 이중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10년간 822건임
- 이첩 사건 중 부패혐의가 적발된 총 541건의 조사결과 기소 1,641명, 징계 1,050명, 고발·의원면직·사직 38명, 기관주의 107건, 제도개선 38건이며, 추징·환수액 1,803억원임
- 연도별 부패사건 조치내용

구분	기소·징계				기관 주의	기타	추징환수액 (백만원)
	합계	기소(%)	징계	고발면직			
합계	2,722	1,634(58.95)	1,050	38	107	38	180,385
2002	210	54(25.71)	153	3	14	-	8,026
2003	223	89(39.91)	119	15	35	-	40,460
2004	168	62(36.90)	106	-	9	-	1,859
2005	185	103(55.68)	75	7	5	6	1,195

2006	304	148(48.68)	156	-	4	4	9,713
2007	415	236(56.87)	176	3	14	3	44,622
2008	242	199(82.23)	42	1	12	4	35,541
2009	297	161(54.21)	131	5	8	13	26,520
2010	573	511(89.18)	58	4	6	7	84,74
2011	105	71(67.62)	34	-	-	1	39,75

- 2002. 공무원 부패사건 중 기소율이 25.71%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성과관리를 통해 2010년에는 부패사건 기소율이 89.18%에 이르러, 실질적인 부패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
- 매년 신고된 공무원 부패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에 비해 2010년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도개선 이후 64.0%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었음
- 다만 기소된 공무원 부패사건 중 실형률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이는 사법부의 재판결과 공개제도 (2-2-1)와 연계되어야 함

[2-1-2] 양형 합리화 방안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1. 부패행위 처벌의 엄정성 및 형평성 확립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필요</li> <li>뇌물죄의 선고형의 종류(형사정책연구원, 2001-2003)</li> </ul>				
	최종심 빈도(%)	선고유예 156(20.6)	집행유예 513(67.9)	실형 87(11.5)	합계 756(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년까지 공무원의 뇌물죄의 최종심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으며 적절한 양형기준에 대한 성립이 필요함</li> <li>양형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 관하여 형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형사재판의 마지막 단계임. 이는 피고인의 자유와 동시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내포되어야 함(최경옥, 2011)</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와 관련된 구체적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 것을 포괄적으로 계획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계획수립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제시가 부족하고, 특히 부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법, 양형위원회규칙</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 11. 29. 사법개혁위원회는 양형제도의 개선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자료조사제도 도입</li> <li>- 대법원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li> </ul> </li> </ul>				

- 참고적 양형기준제도 도입 및 양형위원회 설치
- 양형위원회 설치(2007)
- 향후 양형합리화를 개선방안
  - 소속을 대법원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 위원 13명 중 외부추천 9명으로 확대
- 「양형위원회규칙」을 2007. 4. 27. 제정
  -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을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제8조)
  - 양형위원회 임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은 연구·심의(제2조)
  - 양형기준은 재판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 양형결정관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 제고
- 위원회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제6조)
- 판례(2011노160)
  - 사건개요: 피고인 김OO은 노점상 총괄지후 1하는 반장으로 상피고인 강OO로부터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물건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을 소홀히 하였음
  - 양형기준: 피고인 강OO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업무 적정성을 훼손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는 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뇌물공여 제1유형 기본영역)이다], 뇌물공여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를 통하여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강OO는 자신의 뇌물공여 사실을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인 상피고인 김OO로부터 2천 9백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갈취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강OO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양형자료분석관을 두어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제9조)
- 2007년 「양형위원회규칙」을 제정한 이후 2009년도 하반기 선도된 형량이 얼마나 양형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뇌물죄의 경우 양형기준 평균부합률 89.7%보다 5.3% 낮은 82.2%를 나타내고 있음(김현석, 2010)
- 이는 검사가 양형기준에 의해 구형한 경우 판사의 선고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횡령배임죄(94.9%)와 무고죄(91.5%)의 경우가 가장 부합률이 높으며, 뇌물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김현석, 2010)
- 양형위원회규칙의 경우 법관의 양형에 대한 재량이 너무 광범위하여 양형기준과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최경옥, 2011)

[2-1-3]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강화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1. 부패행위 처벌의 엄정성 및 형평성 확립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판례분석결과 1981-1999년 기간 중 1급이상(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행위자의 41.4%가 사면, 38.4%가 복권되었음</li> <li>•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방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방안 검토</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공직자에 대한 사면이나 감형을 줄여서, 엄격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중립적이고 독립적 입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고려함</li> <li>•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의 핵심쟁점(김진환,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등 권력남용 통제</li> <li>-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실현</li> <li>-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리</li> <li>- 가외성으로 인한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강화</li> </ul> </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기본계획(2002)에서 고위공무원의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었을 뿐,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와 구체적 양형기준, 그리고 전담부서에 관한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윤리법, 사면법,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9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종료로 폐기</li> </ul> </li> </ul>		

- 2010년 4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최근 5년간 특별사면에서 비리공무원 포함여부
  - 2008년 8·15특별사면: 4명의 비리공직자 사면
  - 2009년 8·15특별사면: 비리공직자 제외
  - 2010년 8·15특별사면: 비리공직자 포함(전 당대표 포함)
  - 2012년 신년특별사면: 비리공무원 제외
- 공직자윤리법 개정연혁(별첨 참고)
- 사면법 개정연혁
  - 2011년 7월 18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2007년 12월 21일: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의 장애요인(김진환, 2010)
  - 입법, 행정, 사법 위의 거대한 권력기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첩</li> <li>- 검찰과 공수처 간의 사정기능 중복 등</li> </ul>
--	--

※ 별첨 참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연혁

2005년 5월 18일자 개정	2006년 12월 28일자 개정	2009년 2월 3일자 개정	2010년 3월 22일 개정	2010년 7월 29일자 개정
<p>가. 이해충돌방지의 의무(법 제2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함.</p> <p>나.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법 제14조의4</p>	<p>가. 등록대상재산의 가액 유형에 실거래가격을 추가(법 제6조의4제1호 신설) 공직자 재산등록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매매, 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p> <p>나. 가액등록 대상재산의 범위 확대(법</p>	<p>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에 대한 재산등록·공개 의무 부과(법 제3조제11호 및 제10조제11호)</p> <p>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명 중 2명(한국은행 총재·부총재)만 재산등록·공개 의무자</p>	<p>가.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26조의4).</p> <p>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p>	<p>가. 재산등록의무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상임이사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p> <p>나. 공직자윤리위원회</p>

<p>신설)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          감독위원회 소속공          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이해관계          자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          위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          유한 경우에는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가 직무관련성이 없          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          각하거나 신탁재산          의 관리·운용·처          분에 관한 권한을</p>	<p>제4조제3항제8호 내          지 14호, 법 제6조          의4제2호 신설) 기          존에 내역만 등록하          고 가액은 재산총액          에 반영되지 않았던          합명회사 등의 출자          지분, 귀금속류, 골          동품, 예술품, 자동          차,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하여 가액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          산총액에 반영하고          변동신고시 그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법 제          6조제5항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동사항신고를 위</p>	<p>로 지정되어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등          이 추천하는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          원에게도 한국은행          총재·부총재와 동          일하게 재산등록·          공개 의무를 부과함.          3) 금융통화위원회 위          원의 책임성과 윤리          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재산등록·공          개 의무자와의 형평          성을 도모함.          나. 공직유관단체 지          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          로 명확하게 규정한          후 공직유관단체를</p>	<p>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          직 사유에 추가함(법          제33조제6호의2 신          설).          다.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          을 신분보장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법          제68조 단서).]]          라.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          서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p>	<p>의 민간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          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          원을 위해 분과위원          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          9조제3항, 안 제9조          제5항 신설)          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3년          에서 퇴직 전 5년으          로 확대하고, 취업심          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          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          인등과 회계법인, 세          무법인 등까지 확대          하며, 사외이사, 비          상근 자문 또는 고</p>
--	---	--	--	--

<p>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p> <p>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법 제14조의5 신설)</p> <p>(1) 재산공개대상자 등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p>	<p>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의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p> <p>라. 재산형성과정에서 대안 소명자료 제출 의무 등(법 제8조제13항 내지 제15항, 제22조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법 제30조제1항)</p> <p>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하여 등록재산의 재산형성과정</p>	<p>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p> <p>다.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p> <p>1)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각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p> <p>2)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되, 이 법</p>	<p>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법 제69조).</p> <p>마.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요건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2년 또는 총 3년 이상 받은 경우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로 강화함(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p> <p>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p>	<p>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함(안 제17조)</p> <p>라.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신설).</p> <p>마. 퇴직한 모든 공무</p>
--	---	--	---	---

<p>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함.</p> <p>(2) 재산공개대상자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대상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p>	<p>을 소명하게 할 수 있고,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p> <p>마.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법제12조제4항)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재산 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등록의무자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p>	<p>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p> <p>라.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의 재조정(법제6조의3)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p>	<p>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제78조의2 신설).</p> <p>사.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시 벌금을 상향 조정함(법제84조).</p>	<p>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p>
--	--	--	---	---

<p>구를 받은 날부터 1 월 이내에 그 결과 를 통지하도록 함.</p> <p>라. 주식취득의 제한 (법 제14조의6 신 설)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재산공 개대상자 등과 그 이 해관계자는 신탁계약 이 해지될 때까지는 새로이 주식을 취득 할 수 없도록 함.</p> <p>마.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법 제14조의7 및 제28 조의2 신설)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산공 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와 수탁</p>	<p>청하여 고지거부허 가를 받도록 함.</p> <p>바. 영리사기업체 등 에 대한 자료제출요 구(법 제17조제2항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 회의 장에게 해당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 구받은 영리사기업 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p>			
--	--	--	--	--

<p>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 <p>바.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법제14조의10 신설)</p> <p>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된 경우, 신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p>				
--	--	--	--	--

<p>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p> <p>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요구 (법 제22조제7호의2 내지 제7호의6 신설)</p> <p>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p>				
--	--	--	--	--

---

## 2-2 사법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

2-2-1 사법절차의 공개강화

---

2-2-2 검찰의 소추재량권 합리적 개선

---

[2-2-1] 사법절차 공개강화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2. 사법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국민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 진행상황을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 검토</li> <li>• 민간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간참관인 제도 도입방안 검토</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국민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상황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민간참관인 제도나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li> <li>•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입법화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가 이루어지게 됨</li> <li>• 사법절차공개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li> <li>•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개정</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2004.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국민참여를 사법개혁의 주요의제로 선정</li> <li>• 2004.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건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li> <li>• 2007. 4.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li> <li>• 형사소송법 개정(2011.7.18):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 전</li> </ul>		

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나. 법원의 압수·수색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안 제106조제1항, 제107조, 제109조)

다.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함(안 제106조제3항·제4항, 제114조제1항)

라.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함(안 제196조)

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안 제215조)

바.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218조의2, 제219조)

사.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되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둠(안 제260조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2007.4.30)
  - 배심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양형평결 권한 없음)
  - 배심원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시행되므로 선택적 배심제
  - 배심원 재판에 대한 상고가능

	<p>-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 공판준비절차의 필수화, 증거법에서의 적법절차 관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과정 공개(2011.7.18)</li><li>•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통과</li><li>• 헌법 제17조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조문과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상호 모순되어 위헌소지가 있음</li></ul>
--	--

[2-2-2] 검찰의 소추재량권 합리적 개선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2. 사법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의 기소독점권 및 소추재량권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검토</li> <li>공무원 비리 등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의 기소독점권이나 소추재량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계획을 구상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으로 공무원 비리에 관한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를 제시하였음</li> <li>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을 인식함</li> <li>검찰을 견제하기 수단으로 재정신청제도를 고려함</li> <li>그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입법예고안, 형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2. 2. 17. 개정안)</li> </ul> <p><b>제61조(재정신청)</b></p> <p>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p>		

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009년도 재정신청이 결정된 사건 총 5,199건 중에서 모두 82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은 1.6%에 지나지 않아 재정신청의 법률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재정신청의 인용률을 높이고 재정신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입법예고안(2011.7.12)
  -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연루된 범죄의 내부 가담자가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잡는 데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가 도입
  - 부패·조직폭력·마약범죄의 규명에 기여한 사람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소 대상에서 빠지는 내부증언자 불기소 처분제도도 포함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가속화하며, 부패범죄자의 형량을 낮추어 수사권 오남용을 불러와 결국 부패방지에 역효과 발생가능성
- 다음의 형법 제129조에서 제133조, 제135조부터 제257조 등의 공무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려움(별첨 참고)

※ 별첨 참고 : 「형법」 제129조~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형법 제10259호 2010.04.15 일부개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3조(뇌물공여등)**

-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2-3 법조인사의 공정성·민주성 제고

---

2-3-1 검찰인사의 중립성 확보

---

2-3-2 법관 임명절차개선 및 인사청문회 도입

---

[2-3-1] 검찰인사의 중립성 확보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3. 법조인사의 공정성·민주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인사위원회에 법학자, 시민단체 대표, 재야 법조인 등 외부인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위상 격상</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인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비교적 계획의 범위가 미시적임</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인사위원회의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확대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은 개정되었으나, 실질적 효력은 미미함</li> <li>따라서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요구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인사위원회 규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위원회 외부인 참여의 확대</li> <li>「검찰인사위원회규정」(별첨 참고)</li> <li>2003. 7. 26.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개정</li> <li>2004. 8. 7. 검찰인사위원회 규정 개정</li> <li>2011. 12. 28. 검찰인사위원회 규정 개정</li> <li>검찰인사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의결정족수 삭제(별첨 참고)</li> <li>검찰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추천하는 2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오히려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회의의결의 근거를 삭제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결정족수를 확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li></ul></li></ul> |
|--|---|

※ 별첨 : 위원회 의결정족수 삭제

2004. 8. 7 개정안	2011. 12. 28 개정안
<p><b>제2조(구성 등)</b> &lt;개정 2002.2.4.&gt;</p> <p>①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02.2.4, 2003.7.26, 2004.8.7&gt;</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2003.7.26&gt;</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lt;개정 2004.8.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li> <li>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li> </ol> <p>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lt;신설 2002.2.4, 2003.7.26, 2004.8.7.&gt;</p> <p><b>제4조(회의)</b></p> <p>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2.2.4, 2004.8.7.&gt;</p> <p>제2조 삭제 &lt;2011.12.28.&gt;</p> <p><b>제3조(위원장의 직무)</b></p> <p>①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lt;개정 2002.2.4, 2011.12.28&gt;</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02.2.4.&gt;</p> <p><b>제4조(회의)</b></p> <p>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p> <p>③ 삭제 &lt;2011.12.28&gt;</p>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제5조(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

**제6조(회의록)**

-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조(사건평가 심의)**

-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p>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p> <p><b>제8조(심의사항 보고)</b>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9조(비밀누설금지 등)</b></p> <p>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lt;개정 2011.12.28.&gt;</p> <p><b>제10조(운영세칙)</b>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	--

[2-3-2] 법관 임명절차개선 및 인사청문회 도입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3. 법조인사의 공정성·민주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의 직급제 및 재임용 절차의 합리적 개선</li> <li>• 법관 재임용 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li> <li>• 법조인력 교류확대</li> <li>• 사법집행기관 등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검토</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법집행기관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도입 등을 포함하여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제시함</li> <li>• 인사청문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검찰총장 포함</li> <li>• 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향후 계획표를 작성하여 사법부에 이를 따르도록 권고해야 할 것임</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법관의 직급제 및 재임용 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판검사 및 변호사 간의 교류 및 판검사의 변호사경력자 임용비율 확대 등을 논의하였음</li> <li>• 구체적 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아직까지 사법개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사법집행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실시되고 있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사청문회법 개정</b> (2005.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국회 제출서류에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의 후보자 도달 기한을 청문회 개최 4일전</li> </ul> </li> </ul>		

에서 5일전으로 하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시한을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2005.7.28)

- 제65조의2(인사청문회)

-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07.12.14, 2008.2.29>

-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 2010년 3월 17일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

- 경력법관제: 로스쿨 출신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서 법관을 임명(법조인력의 교류확대)
  - 법관인사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9명 중 6명을 외부인사로 추천함(법관인사의 합리적 개선)

- 아직 사법개혁안에서 논의 중이며 법관의 임명절차에 대한 중립성이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음

---

## 2-4 법조주변 비리유발 환경 개선

---

2-4-1 법관윤리강령의 제정

---

2-4-2 전관예우 관행 개선

---

2-4-3 법조윤리의 확보

---

[2-4-1] 법관윤리강령의 제정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4. 법조주변 비리유발 환경 개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이고 엄격한 자체 윤리강령 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법원, 변협이 윤리강령 제정·시행</li> </ul> </li> <li>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확실한 제재장치 마련</li> <li>변협을 통한 자율적 정화노력 촉진</li> <li>법관윤리강령은 선언적 의무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법관비리의 면죄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조계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확립한다는 계획 하에 윤리강령의 제정과 시행, 위반에 대한 제재 장치와 변협을 통한 자정노력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구상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으로 검찰, 법원, 변협의 윤리강령 제정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통제장치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관윤리강령</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 규칙으로 법관윤리강령제정 및 개정(2006)</li> <li>법관윤리강령의 제정(2006.5.25, 별첨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li> <li>–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li> </ul> </li> </ul>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 2006년 법관윤리강령을 비롯한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위반사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함(국민권익백서, 2011)

연도	2007	2008	2009	2010
위반건수	679	764	1,089	1,436

- 법관윤리강령을 포함한 행동강령 제정 이후 2011년까지 그 처분유형을 살펴보면 주의경고가 3,089건(40.7%)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은 601건(7.9%)에 불과하여 윤리강령의 제재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해임 437건(5.8%), 강등 9건(0.1%), 정직 751(9.9%), 감봉 851(11.2%), 견책 981건(12.9%)
  - 기타 781건(10.3%) 등

※ 별첨 참고 : 법관윤리강령

**제1조(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2조(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⑤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③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2-4-2] 전관예우 관행 개선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4. 법조주변 비리유발 환경 개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법관(1년 이내)의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구성운영의 내실화</li> <li>• 장기적으로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후 합리적 기간 동안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검토</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법관과 검사의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제시하여, 계획의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형사사건 수임제한에만 초점을 둠</li> <li>• 변호사법의 실질적 개정을 통한 수임제한 입법화</li> <li>• 5년 단위의 시간계획을 세워서 전관예우가 소멸할 때까지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퇴직 검사와 변호사의 퇴직한 1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계획을 제시함</li> <li>•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아서 10년여 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했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4월 29일 변호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현황 및 업무내역을 지방 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금지를 명문화</li> <li>•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변호사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li> <li>• 변호사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변호사법 제89조의6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신설)</li> </ul>
--	---

[2-4-3] 법조윤리의 확보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4. 법조주변 비리유발 환경 개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수입료 기준설정, 법률서비스 개선, 투명한 회계처리 등 성실 직무수행 방안의 변호사 단체를 통한 자율적 개선 유도</li> <li>• 중대한 비리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li> <li>• 법조주변 공무원의 부조리 관행 개선</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윤리의 확보를 위해 수입료 기준, 법률서비스 개선, 회계처리의 투명성, 비리변호사의 제명 등과 같은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다양한 계획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안이나 제도개선 등이 마련되지 못했음</li> <li>• 다만 현재 법조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법조윤리 확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의 자율적 단체를 구성하여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li> </ul> </li> <li>• 법조윤리위원회의 참여율 분석과 더불어 이를 통한 사법분야의 자율적 부패감소 노력의 중심역할을 기대해야 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윤리위원회</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윤리위원회 권한(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li> <li>- 법조윤리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수립</li> <li>-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및 조사의뢰</li> </ul> </li> </ul>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 법조윤리위원회의 구성(2011)
  - 경력 10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중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위촉
  -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
  - 전문위원 50인 이내
- 법조윤리위원회 연혁
  - 2011. 07. 27: 법조윤리위원회 제33차 위원전원회의 개최, 제3대 위원장 취임
  - 2011. 05. 17: 변호사법 개정(법률 제10627호)(심사대상추가: 법무법인 등 취업 퇴직공무원 활동내역 심사)
  - 2009. 07. 27: 법조윤리협의회 제15차 위원전원회의 개최, 제2대 위원장 취임
  - 2007. 07. 27: 법조윤리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제1대 위원장 취임
  - 2007. 05. 14: 제1차 법조윤리위원회 구성준비단 회의 개최
  - 2007. 01. 26: 변호사법공포(법률 제8271호)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 2006. 12. 22: 국회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국회 법제사법장위원회 대안)
  - 2006. 03. 29: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국회제출
  - 2005. 09. 2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도입 의결
  - 2004. 12. 31: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건의

- 사건접수현황(김영철, 2011)

구분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26	170	182
특정변호사	438	526	610
합계	464	696	792

- 2007년 설립이후 사건에 대한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정밀검사·분석대상 선정 현황

- 2007년 하반기(27건), 2008년 상반기(44건), 2008년 하반기(6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신청현황

구분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수사의뢰	4	3	2
징계개시신청	3	3	2
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	-	6	2
계	7	12	6

- 법조윤리위원회의 한계(김영철, 2011)

- 상근 전문위원의 부족
  - 법조윤리협의회 직원의 조사권 부여문제
  - 사건의뢰인 신고센터의 설치 등(김영철, 2011)

---

## 2-5 사정기관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확립

---

2-5-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2-5-2 부패신고제도

---

[2-5-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5. 사정기관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확립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기관 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시행할 것을 계획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사정기관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의나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li> <li>• 향후 권익위원회법 등을 통해 사정기관 부패 신고자 보호 요건이나 제도 등이 마련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li> </ul>		
과제별 성과	<p>※ 사정기관 부패 공직자와 관련한 별도의 논의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논의함</p> <p>[1] 주요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시부터 시행</li> <li>• 2005, 2007. 법률개정</li> <li>• 2010. 협조자 보호강화, 보호조사 불응금지의 명확화, 보호대상에 대한 소관 공공기관 신고포함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li> </ul>		

[2] 신고자보호제도 주요내용

- 주요내용신고자보호제도는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기관 등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청렴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장치
-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권익위법 제2조)**
  -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향응, 금품수수, 인사청탁)
  -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 신고해야 보호가능
  - 기명의 문서로 신고가능
- **주요보호제도**
  - 비밀의 보장: 신분비공개
  - 신분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보장(인사상,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위반시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변의 보호(권익위법 제64조)
  - 협조자 보호 및 책임감면,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불이익 추정 등
-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 추천

- **보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77조 1항)**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 10%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 4%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보상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 등 7명, 위촉직 임기 2년, 1차에 한해 연임가능
- 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3] 신고자보호제도 주요성과

- 연도별 신고자 보호조치요구현황
  - 2011년 현재 11건
- 보호조치 요구자의 소속기관 현황
  - 중앙행정, 지자체, 공직유관, 사립고, 민간기업 등
- 신분보장조치 요구사건의 처리현황
  - 원상회복, 취업알선, 책임감면, 인사교류 등
  - 기각, 취하, 종결, 조사중 등
-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350만원</li> <li>• 신고자 불이익 사전 예방실적</li> <li>- 2011년 4건</li> <li>• 연도별 포상실적</li> <li>- 2011년 현재 포상 1명, 위원장 표창 3명</li> <li>• 연도별 포상금 지급실적</li> <li>- 2011년 현재, 2,500만원</li> <li>•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li> <li>- 2011년 신청(12건), 지급(12건), 보상대상가액(18,834,014천원), 보상금액(1,499,401천원)</li> <li>•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관련 성과를 국민권익위원회 백서를 통해 발표함</li> <li>•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포상제도를 통해 공공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가치를 금전적 단위를 매년 발표하여 공직사회에 부패의 심각성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li> </ul>
--	---

[2-5-2] 부패신고제도

부 문	사법부문	항 목	2-5. 사정기관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확립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기관의 활동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국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li> <li>• 향후 신고매뉴얼의 개발을 통해 신고건수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고에 대한 경계심 확산과 신고건수의 증가나 이첩사건 처리결과의 측정보다는 실질적 사례관리를 통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직자 부패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기관의 활동과정에서 비리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2002년 당시 사정기관의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임</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신고센터</li> </ul>		
과제별 성과	<p>※ 사정기관 부패 공직자와 관련한 별도의 논의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논의함</p> <p>[1] 부패신고제도 운영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종합민원센터와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li> <li>• 부패신고 상담안내는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퇴직공무원을 전문상담위원으로 배치함</li> <li>• 신고사항처리절차 마련</li> </ul>		

- 부패신고는 권익위에 접수된 후, 조사관의 심사와 확인, 주심위원 검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감사원, 수사기관,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으로 이첩
- 신고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수사를 종결하고 10일 이내 권익위에 통보
-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 30일 이내 재조사 요구가능

[2] 부패신고 제도 성과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2011년 현재 2,529건
- 업무분야별 신고접수 현황
  - 행정자치, 인사행정, 재정·경제, 건설교통, 산업농림수산, 노동복지환경, 교육문화관광, 국방외무통일, 민사형사법무 등
- 연도별 상담·안내현황
  - 2011년 현재 5,275건(전화, 인터넷, 방문 등)
- 신고접수 및 처리실적
  - 2011년 현재 2,529건
- 조사기관 이첩사건 조사결과 내용
  - 2011년 현재 기소(71건), 징계(34건), 고발·면직, 기관주의, 추징환수액(3,975백만원) 등을 조사함
-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관련 성과를 국민권익위원회 백서를 통해 발표함

---

### 3. 정치부문

---

3-1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

---

3-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3-3 정치활동의 공개 및 윤리규정 강화

---

3-4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

---

## 3-1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

---

3-1-1 국민경선제 등 상향식 추천제도 정착

---

3-1-2 정당운영의 내실화

---

3-1-3 저비용 선거풍토 확립

---

[3-1-1] 국민경선제 등 상향식 추천제도 정착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1.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에게는 선거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은 정당의 유일 권한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li> <li>-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에선 모바일투표를 통해 국민경선을 실시한 바, 아직까지는 준비가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경선과정 중 부정부패 사례가 대거 드러나면서 다시금 국민경선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이 광범위하며, 핵심 쟁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계획으로는 국민경선 및 상향식 후보자 선출을 위한 비용을 국가 및 정당이 부담하는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시함.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화로 모색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음</li> <li>• 국민경선 및 상향식 후보자 선출을 위한 비용 부담 이외에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정당의 당헌</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야의 국민경선제 실시(별첨 참고)</li> <li>• 법제도상으로는 아직 논의 중</li> </ul>		

※ 별첨 : 주요 정당의 “국민경선제 도입” 관련 당헌

<p style="text-align: center;"><b>새누리당</b></p>	<p style="text-align: center;"><b>민주통합당</b></p>
<p style="text-align: center;"><b>새누리당 당헌</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96조(국민공천배심원단)</b></p> <p>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후보자추천을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둔다.</p> <p>②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p> <p>③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p> <p>④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중 다음 1호와 2호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의원 후보자중 다음 3호를 각각 심의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회의원: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li> <li>2.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전략지역 후보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민주통합당 당헌</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절 경선 제104조(추천선거)</b></p> <p>①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최고위원회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p> <p>⑤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li> </ol>

<p>3.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p> <p>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p> <p>⑥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	---

[3-1-2] 정당운영의 내실화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1.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은 폐지되었으나, 중앙당을 폐지하고 원내 정당화로 가야한다는 견해와 원내 정당화와 원외 정당화 간의 논의는 진행 중에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원내 중심의 정당운영을 제시하고 지구당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의 목적과 범위가 다소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다소 구체적이거나,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중” 으로 평가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 3.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 폐지(별첨 참고)</li> </ul>		

※ 별첨 :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구당 폐지

제12차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1호	제13차 일부개정 2004.3.12 법률 제7190호
<p><b>제3조(구성)</b>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lt;개정 1980.11.25, 1989.3.25, 1997.12.13, 2002.3.7.&gt; [전문개정 1972.12.30]</p>	<p><b>제3조(구성)</b>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lt;개정 1980.11.25, 1989.3.25, 1997.12.13, 2002.3.7, 2004.3.12&gt;[전문개정 1972.12.30]</p>
<p>• <b>정당법 부칙</b> &lt;제7190호, 2004.3.12&gt;  <b>제5조(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b>                      ①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인계한다.</p> <p><b>제7조(지구당 등의 등록말소)</b>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시·군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b>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b>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제8조 제9항</b> 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제4조 제8항</b> 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시·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도당을"으로 한다.</p>	

[3-1-3] 저비용 선거풍토 확립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1. 고비용 정치구조의 청산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선거구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li> <li>• 이에 따라 저비용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제안</li> <li>•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6조 제1항에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li> </ul> </li> <li>•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공영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사무원 등 수당, 벽보·공보·소형인쇄물 작성비용, 신문·방송광고 비용, 방송연설 비용 등은 선거결과 기탁금 반환요건 충족시(선거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만 국가에서 일부 보전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는 자비로 할 수밖에 없음</li> </ul> </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비용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저비용 선거운동 방법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 등의 세부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계획 범주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크게 구체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로 평가함</li> </ul>		

<p>관련 법령 및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공직선거법</li> </ul>
<p>과제별 성과</p>	<p>[1] 2002년 「선거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지방선거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 실시(도입과정은 별첨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는 2002년 3월7일 선거법을 개정</li> <li>-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선거부터 실시</li> <li>-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2004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li> <li>-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299개 의석 중 지역구 243개를 제외한 56개로 정당투표에서 득표한 결과에 따라 의석 배분</li> </ul> </li> </ul> <p>[2]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li> </ul> <p><b>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b></p> <p>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2012.1.17, 2012.2.29] [본조신설2004.3.12, 제목 개정 2005.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비용선거를 위해 선거비용제한액에 대한 조항이 「공직선거법」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별첨 참고)</li> <li>• 「공직선거법」의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1994.3.16: 해당 조항이 제정됨</li> </ul>

1997.1.13: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제2항에서 '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및 공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고 하였음

2004.3.12: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조항 신설

2005.8.4: 제1항의 8항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내용 신설

2008.2.29: 제1항의 3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산정식 변경(인구수 X 90원)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이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일부가 변화되었으나, 이후에도 논의가 진행 중임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제목개정 2011.7.28]

※ 별첨 :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시

<p>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p>	<p>제17차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p>	<p>제20차 일부개정 2004.3.12 법률 제7189호</p>
<p><b>제146조(선거방법)</b></p> <p>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p> <p>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p> <p>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146조(선거방법)</b></p> <p>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p> <p>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p> <p>&lt;개정 2002.3.7&gt;</p> <p>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146조(선거방법)</b></p> <p>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p> <p>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p> <p>&lt;개정 2002.3.7, 2004.3.12&gt;</p> <p>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b></p> <p>①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p>	<p><b>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b></p> <p>④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p>	<p><b>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b></p> <p>④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p>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3.7>

⑤ 제4항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6, 2002.3.7>

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3.7>

⑤ 제4항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6, 2002.3.7>

	<p>⑥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원의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lt;신설 2002.3.7&gt; &lt;중전 제6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02.3.7&gt;</p> <p>⑦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원의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lt;신설 2002.3.7&gt;</p> <p>⑧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시·도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시·도원의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시·도원의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원의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시·도원의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별도로 빼야한다. &lt;신설</p>	<p>⑨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lt;신설 1995.4.1, 2000.2.16, 2002.3.7, 2004.3.12&gt;</p>
--	--	--

	<p>2002.3.7&gt;</p> <p>⑨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lt;신설 1995.4.1, 2000.2.16, 2002.3.7&gt; &lt;제6항에서 이동 2002.3.7&gt;</p>	
--	--	--

※ 별첨 : 「공직선거법」 의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개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7차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제20차 일부개정 2004.3.12 법률 제7189호	제33차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p>제121조(선거비용의 제한액)</p> <p>① 선거비용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p> <p>1. 대통령선거 50억원에 인구 1인당 320원을 가산한 금액</p> <p>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2천800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800만원, 읍·면·동마다 10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p>	<p>제121조 삭제&lt;1997·1·13&gt;</p> <p>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p> <p>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선거일공고일부터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할 비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및 공고절차 기타 필</p>	<p>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p> <p>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p> <p>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p> <p>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p> <p>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인구수×20원)</p> <p>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p>	<p>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p> <p>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lt;개정 2005.8.4, 2008.2.29&gt;</p> <p>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p> <p>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p> <p>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90원</p> <p>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p> <p>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p>

<p>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2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70원을 가산한 금액</p> <p>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20만초과 3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2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4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다.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3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3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3. 시·도의회의원선거 1천500만원에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p> <p>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7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50원을 가산한 금액</p> <p>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7만초과 9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p>	<p>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p>	<p>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p> <p>6. 시·도지사선거</p> <p>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p> <p>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p> <p>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p> <p>8.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p>	<p>6. 시·도지사선거</p> <p>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p> <p>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p> <p>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p> <p>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p> <p>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p>
---	---	--	---

<p>의 금액에 7만을 초과하는 때 1인마다 4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9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9만을 초과하는 때 1인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4. 시·도지사선거</p> <p>2억원에 선거연락소마다 1천20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p> <p>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당 90원을 가산한 금액</p> <p>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0만초과 60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300만을 초과하는 때 1인마다 8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600</p>		<p>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p> <p>③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	--	--	--

<p>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600만을 초과하는 때 1인마다 7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800만원에 당해 선거구의 인구 1인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1만 5천을 넘는 경우에는 1만5천을 넘는 때 1인마다 60원을 가산한 금액</p> <p>6.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천800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800만원, 읍·면·동마다 10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2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70원을 가산한 금액</p>		<p>[본조신설 2004.3.12]</p>	
--	--	-------------------------	--

<p>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20만초과 3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2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4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만초과 40만이하인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3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4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금액에 4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②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실비보상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p> <p>③ 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은</p>			
--	--	--	--

<p>이 법이 시행된 연도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전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하되, 그 변동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때마다 정한다.</p>			
--	--	--	--

---

## 3-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3-2-1 정당 국고보조금 및 선기비용 사용에 대한 선관위 조사·확인 강화

---

3-2-2 불법 정치자금 적발·처벌 강화

---

3-2-3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공급 제재

---

3-2-4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3-2-5 정치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장치 강구

---

[3-2-1] 정당 국고보조금 및 선거비용 사용에 대한 선관위 조사·확인 강화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의 국고보조금 및 선거비용 사용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확인권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정당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선거비용 지출의 진실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핵심 쟁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의 범주가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의 구체성에서도 어떠한 방안을 도입하여 투명성과 진실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다소 추상적인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자금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 「정치자금법」의 정당재정 관련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재정의 회계책임자 및 회계처리에 관한 조항을 2004년 3월 12일에 신설하였음(별첨 참조)</li> <li>그 이전의 법률에는 ‘회계책임자’와 관련된 사항을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에서만 확인 가능하였고, 별도의 회계책임자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은 없었음</li> <li>2012년까지 제24차 개정이 있으면서 관련 조항이 더욱 신설되었고, 세부사항을 보강함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li> </ul> </li> <li>선거비용 지출의 진실성 확보는 관련 내용으로 대체(3-2-2. 불법정치자금 적발 및 처벌 강화)</li> <li>관련 법률을 신설하여 정당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는 축소 및 폐지 논란이 정치권에 일고 있음(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정당에 배부한 정당보조금은 사상 최고액인 1113억 여 원에 이룸)</li> </ul>		

※ 별첨 : 「정치자금법」 신설조항

<p>「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3차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2호</p>	<p>「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4차 (일부개정) 2004.3.12. 법률 제7191호</p>	<p>「정당자금법」 제24차 (일부개정) 2012.2.29. 법률 제11376호</p>
<p><b>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b>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수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②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lt;개정1989.12.30, 1992.11.11&gt;</p>	<p><b>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b> 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3.12] <b>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b> 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p>	<p><b>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b>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lt;개정 2008.2.29&gt; <b>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b> ①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p>

<p>1. 회원의 후원금·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직업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건별 일시·금액 및 기부방법</p> <p>2. 정당등에 대한 기부의 일시·금액</p> <p>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p> <p>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lt;신설 1991.12.31 &gt;</p> <p>1.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p>	<p>지 아니하다.</p> <p>②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p>	<p>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2008.2.29, 2010.1.25&gt;</p> <p>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p> <p>2.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p> <p>②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p>
--	---	--

<p>은 일시·금액</p> <p>2.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서식·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lt;개정 1992.11.11 &gt;</p>	<p><b>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b></p> <p>① 정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2.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p> <p>가. 지출의 목적·일시 및 금액</p> <p>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p> <p>3. 중앙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p> <p>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p>	<p>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p>
---	---	---

	<p>매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헌·당규에 정하는 회계처리절차 준수여부</li> <li>2. 예금계좌의 잔액</li> <li>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li> <li>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li> </ol> <p>④ 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4.3.12]</p>	<p>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제외한다)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개정 2010.1.25&gt;</p> <p>⑥ 대통령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추천후보자로 된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지체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p>
--	--	--

		<p>한다.</p> <p>⑦ 정치자금의 지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b></p> <p>① 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출과목, 지출의 목적·일자 및 금액</li> <li>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li> </ol> </li> </ol>
--	--	--

		<p>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p> <p>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li> <li>2. 예금계좌의 잔액</li> <li>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li> <li>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li> </ol> <p>④ 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	--	--

[3-2-2] 불법 정치자금 적발·처벌 강화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금권정치 및 불법 정치자금의 행태가 남아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돈 봉투를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있었음. 또한 정당의 비례 대표 후보자들이 소속 정당에 공천헌금을 납부하고 공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이상묵, 2009)</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 정치자금의 적발과 처벌의 강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세부계획을 제시한 바, 주요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계획들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법령을 언급하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국회규칙, 국회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li> </ul>		
과제별 성과	<p>◆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률의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의 제7조 1항의 내용이 2004년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던 것을 검찰총장·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대상에 포함함(별첨 참조)</li> <li>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연장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소시효는 1994년 제정에서 2005년까지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으면서 큰 변화가 없으나, 다만,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화한 노력이 있었음(별첨 참조)</li> </ul> </li> </ul>		

- 「공직선거법」은 2006년 개정을 통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공개의 소명 이외에도 재산형성과정을 포함시켰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산형성과정까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가액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고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하기 위함(별첨참조)

「공직선거법」 제22차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098호

####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조에서 “공개대상자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 받은 자는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6.12.28>

⑭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6.12.28>

⑮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전문개정 1993.6.11]

※ 별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의 정치자금위반 혐의 포함

제정 2001.9.27 법률 제6516호	제2차 일부개정 2005.1.17 법률 제7336호	제12차 일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411호
<p>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p> <p>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p>	<p>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p> <p>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p> <p>&lt;개정 2005.1.17.&gt;</p>	<p>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lt;개정 2011.5.19.&gt;)</p> <p>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p> <p>&lt;개정 2011.5.19, 2012.3.21&gt; &lt;시행일 2012.3.21&gt;</p>

※ 별첨 :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관련 조항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2004.3.12,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2005.8.4, 일부개정]
<p>제268조 (공소시효)</p> <p>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제268조 (공소시효)</p> <p>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lt;개정 2004.3.12&gt;</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죄의 공소시효는 그 보존기간만료일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lt;신설 2004.3.12&gt;</p>	<p>제268조 (공소시효)</p> <p>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lt;개정 2004.3.12&gt;</p> <p>② 삭제 &lt;2005.8.4.&gt;</p>

※ 별첨 : 「공직선거법」의 재산형성과정 심의권한 관련 조항 개정

제19차 일부개정 2005.5.18 법률 제7493호	제22차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098호	제33차 일부개정 2011.7.29 법률 제10982호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공개와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lt;개정 2005.5.18.&gt; [전문개정 1993.6.11.]</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lt;개정 2005.5.18, 2006.12.28.&gt; [전문개정 1993.6.11]</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1.7.29&gt; [전문개정 2009.2.3]</p>

[3-2-3]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공급 제재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센터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지난 8월 5일(금), 언론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최근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 이라는 내부분건의 존재가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전경련은 그룹 회원사별로 여야 지도부와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접촉하여 대기업 규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로비할 의원들을 할당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까지 개혁입법 저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나아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가 대신 출석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의 노골적인 정경유착 시도와 재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출석도 거부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규탄하며, 나아가 여야 정치권이 입을 모아 전경련의 행태를 비판한 만큼 기업의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li> <li>•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현행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업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기부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기업의 모금을 허용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공급을 제재하기 위해 다소 한정적인 세부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계획의 범주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계획별 시간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다소 미흡함</li> </ul>		

<p><b>관련 법령 및 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자금법</li> </ul>
<p><b>과제별 성과</b></p>	<p>[1] 「정치자금법」 개정의 흐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상목(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개정을 1965년부터 현재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2005. 전환기: 주요 내용인 ‘기업이나 단체로부터의 고액 후원금 수수를 금지, 소액다수기 부제 도입, 후원금의 하향조정, 후원금 모금 주체의 제한, 정치자금 지출의 부정방지 조치 신설’ 등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를 도모</li> <li>2006년부터 현재까지 재조정기: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후원회 기부내역의 수시보고제도 폐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지출절차의 통합·간소화’ 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시도</li> </ul> </li> <li>2004년 3월의 정치자금법 개정은 2002년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으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원에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있어서 불법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됨</li> </ul> <p>[2] 관련 조항 및 내용(별첨참고)</p> <p>2004년 이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의 제한)에서 일부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함</p> <p>2004.3.12: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개정. 개정사유는 단체 및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함으로써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며,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이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p>

없도록 하며,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2004년 당초개정안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신용카드(ex. 롯데카드)의 포인트를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정치후원금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의 활성화에 기여함

**[3] 구체적 성과**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기탁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가 증가함을 의미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탁금 (원)	1,000,000	2,500,000	151,744,910	2,039,461,230	4,456,038,250	5,445,011,740	7,556,841,960	7,826,221,230

※ 별첨 : 「정치자금법」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자금에 관한 법률」</b> 제11차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70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자금법」</b> 제14차 일부개정 2004.3.12 법률 제7191호</p>
<p><b>제12조(기부의 제한)</b></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lt;개정 1989·12·30, 2000.2.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li> <li>2.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li> <li>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li> <li>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li> <li>5.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li> <li>6. 학교법인</li> <li>7. 종교단체</li> <li>8.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li> </ol> <p>②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lt;신설 2000.2.16&gt;</p>	<p><b>제31조(기부의 제한)</b></p> <p>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p> <p>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p> <p><b>제2조(기본원칙)</b></p> <p>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li> <li>2. 선거비용 : 20만원</li> </ol>

[3-2-4]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및 법인의 정치자금을 제외한 개인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정당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처리의 투명성확보라는 계획에 따라 핵심 쟁점을 포함하는 세부계획들을 계획범주에 포괄하고 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계획들을 살펴보면, 과제별 시간계획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안하고 있어, ‘계획의 구체성’ 이 다소 확보된 것으로 보임</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자금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4-1.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3-2-4-2. 일정액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방안은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등으로 일정 부분 확보됨(별첨 참조)</li> <li>•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회계보고)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회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각호의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t;개정 2004.3.12 &gt;”에 의해 회계보고된 사항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단, 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음(별첨 참조)</li> <li>• 정치자금의 개념은 2002년 계획 당시와 현재의 정의를 비교해보았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자금에 관한 법률」</b>  <b>[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2호 ]</b></p> <p>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자금법」</b>  <b>[ 일부개정 2012.2.29 법률 제11376호 ]</b></p> <p>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	--	--

※ 별첨 : 「정치자금법」 회계처리 투명화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제7차 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40호	제14차 일부개정 2004.3.12. 법률 제7191호	제24차 일부개정 2012.2.29. 법률 제 11376호
해당사항 없음	<p>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4.3.12]</p>	<p>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p> <p>②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2조(기본원칙)</p> <p>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p> <p>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p>	<p>제2조(기본원칙)</p> <p>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1회 50만원 미</p>	<p>제2조(기본원칙)</p> <p>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p>

<p>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lt;개정 1994·3·16&gt;</p> <p>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lt;신설 1994·3·16&gt;</p>	<p>만의 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되,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lt;신설 2004.3.12 &gt;</p>	<p>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p> <p>2. 선거비용 : 20만원</p>
<p><b>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b></p> <p>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p>	<p><b>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lt;개정 2004.3.12.&gt;)</b></p> <p>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lt;개정 2004.3.12 &gt;</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p>	<p><b>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b></p> <p>①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p>

<p>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중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1994·3·16]</p>	<p>이하(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를 기부·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lt;신설 2004.3.12&gt; &lt;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4.3.12&gt;</p> <p>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lt;신설 2004.3.12&gt; &lt;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4.3.12&gt;</p> <p>④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중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개정</p>	<p>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lt;개정 2010.1.25&gt;</p> <p>③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p>
--	---	--

	<p>2004.3.12&gt;          &lt;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04.3.12&gt;</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제2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개정 2004.3.12&gt; &lt;제3항에서 이동 2004.3.12&gt;</p> <p>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lt;신설 2004.3.12 &gt;</p> <p>⑦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p>	<p>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을 말한다)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lt;개정 2008.2.29&gt;</p> <p>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p>
--	--	---

	<p>사본교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04.3.12&gt; &lt;제4항에서 이동 2004.3.12&gt;          [본조신설 1994.3.16.]</p>	<p>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선거비용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 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p>
--	---	--

		<p>한다.</p> <p>⑨ 제1항의 공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	--	--

[3-2-5] 정치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장치 강구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선과 대선에서 아직까지도 불법정치자금, 정치부패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li> <li>- 건전한 정치자금 모금 활성화와 투명한 정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패자에 대한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나 많이 부족한 실정임</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장치로 위의 제도들을 제시하는 것은 계획목적에 위해 범위가 다소 적절하나, 보다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흡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안들을 보다 엄격히 행사해야 함을 주로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추진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li> </ul>		
과제별 성과	<p>[1] 공무담임권 제한 관련 조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부패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2004년에 신설하고 현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li> <li>「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li> </ul>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개정 1997.11.14, 2000.2.16, 2005.8.4, 2009.2.3, 2010.1.25, 2012.1.26>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0.1.25>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10.1.25>

## [2] 비리혐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 검토

- 비리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 검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16대~18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사례 중 47%가 비리혐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된 것은 아직까지 비리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① 16대~18대(2000~2012)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사례는 총 19건으로 원안가결 1건, 폐기 8건(철회 2건), 부결 8건 등으로 나타났음
- 뇌물, 횡령, 알선수재 관련 사례가 19건 중 9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부결되거나 폐기됨. 이 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5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기타 1건 등이 있음

### ② 18대(2008~2012)

-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처리한 사례는 3건으로 횡령죄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알선수죄와 변호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인한 체포동의안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체포동의안은 폐기됨

---

### 3-3 정치활동의 공개 및 윤리규정 강화

---

3-3-1 국회운영과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 확대

---

3-3-2 국회 윤리규정 준수 강화

---

3-3-3 바람직한 정책대안에 대한 입법화 장치 마련

---

[3-3-1] 국회운영과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 확대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3. 정치활동의 공개 및 윤리규정 강화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운영과 정책결정 과정을 확대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운영과 정책결정과정의 공개라는 목표에 따라 기록표결제와 국회의사활동의 유선중계방송 실시라는 세부계획을 제안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세부계획을 명시하지 않아 다소 미흡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성 면에서도 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더욱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lt;개정 2000.2.16&gt;</li> <li>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lt;개정 1994.6.28, 2000.2.16&gt;</li> <li>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li> <li>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li> <li>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li> </ol> </li> </ul>		

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8>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3.2.4>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신설 2010.5.28>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5.28>

- **2004년 5월 국회방송 개국** : 국회방송은 국회의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주요회의를 편집·가감 없이 생중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3-3-2] 국회 윤리규정 준수 강화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3. 정치활동의 공개 및 윤리규정 강화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자체적으로 정치조직의 윤리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윤리규정 준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포함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세부계획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의 구체성에서도 세부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면에서 “하”로 평가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공직자윤리법, 국회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원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이익충돌금지의 내용을 내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겸직금지조항과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금지 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li> </ul> </li> <li>〈6. 국회의원윤리강령〉 1991. 2. 7 제정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민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li> </ul>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할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제8조와 제9조 조항을 통해 국회의원의 다른 직의 겸직을 금하고 있음

**제8조(겸직금지등)**

-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2005년에는 이해충돌 금지규정 신설, 2011년에는 3항과 4항을 신설

하여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퇴직공직자에게로 확대 보강함

<p><b>제19차 일부개정 2005.5.18 법률 제7493호</b></p>	<p><b>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b></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18]</p>
<p><b>제33차 일부개정 2011.7.29 법률 제10982호</b></p>	<p><b>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b></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1.7.29&gt;</p> <p>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7.29&gt; [전문개정 2009.2.3]</p>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심사 기한 만료	임기 만료 폐기
국회	의안			가결	부결	철회	폐기	기타		
18대	윤리심사 안	2	2					2		
	징계안	58	58	1		19	7	31		
	계	60	60	1		19	7	33		
17대	윤리심사 안	45	21	7	11	2		1	24	
	징계안	37	21	10	5	5		1		16
	계	82	42	17	16	7		2	24	16
16대	윤리심사 안	3	3					3		
	징계안	13								13
	계	16	3					3		13

- 「국회법」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따라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5.7.28]”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래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3-3-2-3.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계획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략시킴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제13조(자문위원회의 구성)을 2005년 신설하

- 여 외부인사(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 국회소속 정무직공무원) 등을 자문위원회로 구성함
- 향후 계획에서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제16대 국회~제18대 국회 동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을 살펴보면, 접수된 의안에 비해 가결을 포함한 처리 건수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동료의원에 대한 습방망이 처벌(ex.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정도)을 내리거나 징계를 유보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무색하다는 비난이 많음
    - 제15대 국회와 제16대 국회의 경우 임기만료 폐기 건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별첨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19차 일부개정 2005.5.18 법률 제7493호	제29차 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2호	제33차 일부개정 2011.7.29 법률 제10982호
<p><b>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b></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5.5.18.]</p>	<p><b>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b></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2.3]</p>	<p><b>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b></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p>

		<p>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1.7.29&gt;</p> <p>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7.29&gt; [전문개정 2009.2.3]</p>
--	--	---

[3-3-3] 바람직한 정책대안에 대한 입법화 장치 마련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3. 정치활동의 공개 및 윤리규정 강화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법 청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헌법 제26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권리임. 이러한 입법청원제도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계획을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계획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간계획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제26조),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청원처리 통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결과)</li> </ul>						
	국회	접수	채택	본회의불부의	철회	폐기	위원회 계류
	16대 국회 (2000-2004)	765	4	316	19	426	765
	17대 국회 (2004-2008)	432	4	102	10		116
	18대 국회 (2008-2012)	272	3	61	5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6대 국회에서 제18대 국회까지 접수된 청원의 수</li> </ul>							

- 765건→432건→272건으로 감소하였고, 채택된 청원의 수는 각각 4건, 4건, 3건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 계류 중인 청원의 수가 16대 765건, 17대 116건, 18대 203건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행 입법 청원 제도
  - 청원의 요건으로서 1인 이상의 의원 소개를 규정하여 과도한 민원성 청원의 남발을 억제하고자 함
  - 청원제도가 청원자와 의원의 사적 연계에 의존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입법청원제도 자체를 사적 연고나 친분관계에 따라 좌우하게 만들어 입법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대부분의 청원을 임기 만료 폐기시킴으로써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함
- 또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90일 이내 심사를 못한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90일 이내 심사’가 강제가 아닌 권고규정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
  - 임기만료의 청원의 자동폐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 각 정당의 직능사회기구 내에 입법청원센터 설치,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 의무화,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청원심사소위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박선웅·정상호, 2009)

※ 별첨 : 「국회법」 제9장 (청원)

국회법 [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57호 ]	국회법 [ 일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416호 ]
<p style="text-align: center;"><b>제9장 청원</b></p> <p><b>제123조(청원서의 제출)</b></p> <p>①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p> <p><b>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b></p> <p>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p> <p>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9장 청원</b></p> <p><b>제123조(청원서의 제출)</b></p> <p>①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p> <p><b>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b></p> <p>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lt;개정 2011.5.19&gt;</p> <p>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p>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5.31>
- 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⑥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⑦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5.31>
- 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⑥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⑦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3-4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

3-4-1 정치 주체로서의 국민 참여의식 및 책임의식 제고

---

3-4-2 시민단체의 합법적인 비판·참여활동 보장 및 제도화

---

3-4-3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패기록 등 공개 강화

---

[3-4-1] 정치 주체로서의 국민 참여의식 및 책임의식 제고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4.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선거, 언론, 시민단체 등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정치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때에 민주정치가 확립될 수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참여의식 및 책임의식 제고라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세부추진계획을 포괄하고 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계획의 구체성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사회협약</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선거매니페스토 운동:</b> 정당과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정책대안들을 유권자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아래로부터의 대안, 시민주권, 열린소통 및 신뢰사회 등을 추구함 (2005.11.18: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준) 1차 준비회의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요 활동:</b> 문서화된 매니페스토 발표 촉구 민주경선 실시 및 후보자 조기선출 촉구 매니페스토 선거 약속다짐을 위한 정당 및 후보자 서약식 부실공약·급조공약 퇴치 운동 매니페스토 언론보도 촉구 정당 및 후보자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유권자용 매니페스토 비교분석표 개발</li> </ul> </li> </ul>		

유권자를 위한 매니페스토 정보제공 활동  
시민매니페스토 개발 및 제안 활동 등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은 공명선거 정착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1987년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활동을 위해 출범한 후,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공직자선거에서 부정선거 감시 및 준법선거·정책선거·투표참여 촉구 및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 실천을 통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올바른 지도자 선택으로 민주주의·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 2009. 1. 1. 기준 148개 시민단체들과 지역공선협등이 가입하여 전국적으로 활동
  - 주요활동: 깨끗한 선거정착을 위한 부정선거 감시활동
    -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 캠페인 활동
    - 준법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선거법준수 서약식·입후보자 의식개혁 촉구 활동
    - 올바른 지도자 선택을 위한 입후보자의 정책·자질 검증 활동
    - 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유권자의 의식개혁·유권자의 투표참여 촉구 활동
    - 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입법청원 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등
- **투명사회협약:**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정부·재계·정치권·사회단체 등이 2005. 3. 9. 체결한 반부패 협약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4대 부문의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명이 서명함으로써 협약이 체결
  - 주요내용: 내용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뉨
    1. 공공 부문: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p>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기구 설치</p> <p>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p> <p>2. 정치 부문: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p> <p>직무 관련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블라인드 트러스트) 도입</p> <p>불법 조성·수수 정치자금의 국고 환수 등</p> <p>3. 경제 부문: 윤리경영 실천</p> <p>회계 투명성 제고</p> <p>부당 내부거래 차단 제도 개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p>
--	--

[3-4-2] 시민단체의 합법적인 비판·참여활동 보장 및 제도화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4.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년대 중반 주민소송,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으나, 절차상, 요건상 제한이 심하여 실제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시민단체와 국민의 활발한 비판·참여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단체의 합법적인 비판·참여활동을 보장 및 제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핵심 쟁점사항을 포함하고 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계획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시간계획과 구체적 세부추진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li> </ul>		
과제별 성과	<p>[1] 관련 법률 제정(주민소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2006.5.24. 법률 제795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됨</li> </ul> </li> </ul> <p>[2] 시행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사례(1) : 2007년 12월 ‘하남시 화장시설 유치관련 주민소환’ 2007년 12월에는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4명의 정치인이 주민</li> </ul>		

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벌어졌으나 역시 투표율이 31.3%로 33.3%를 넘지 못해 개표조차 되지 않음

– **대표적 사례(2) : 2009년 8월 26일 ‘김태환 도지사 주민소환’**

제주 시민단체들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한 점과 내국인 카지노·한라산 케이블카 등의 무리한 토건사업, 영리법원 설립 등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도정으로 소환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11%의 투표율로 소환운동은 현 도지사의 복귀로 마무리 됨

– **대표적 사례(3) : 2011년 12월 16일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2011년 5월 국토부에서 과천지식정보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을 여 시장이 수용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의 소환 청구로 선거가 진행되었지만, 투표율이 7.8%로 법에서 정한 33.3%의 투표율을 넘지 못해 결국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소환일정은 마무리됨

**[3] 주민소환제도의 구체적 성과**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주민소환 청구건수**

- 전국적으로 모두 48건으로 이 가운데 청구요건을 충족해 투표를 진행한 것은 6건에 불과하며 4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되지 않음
- 주민소환 투표가 법 위반이나 비리, 부정부패가 아닌 단순한 정책문제, 또는 정치적 배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개표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별첨 참고)

주민소환 건수	투표실시	미투표 종결	추진 중	총계
2007년~2011년	6	41	1	48

출처: 행정안전부

- 청구자가 투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이를 부담해 과천시의 경우, 2억3천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 주민소환투표 서명부에 성명을 위조하거나 한 명이 다수의 서명을 하는 등 부정 서명에 대한 문제 지적
- 개선사항 : 보다 적실성 있고 구체적인 청구요건 제시로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강구해야 할 것임

#### [4] 관련 법령의 조항 신설(주민소송제도)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본조신설 2005.1.27]
  -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주민소송제도의 구체적 성과

•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진행된 주민소송 건수

- 전국적으로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주민패소로 종결된 소송이 10건이며, 1건은 1심 중 소송 취하하여 종결됨. 나머지 15건은 2, 3심 계류 중에 있음
- 그 중 3년이 넘게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완료된 사건들도 평균 2년이 소요됨

주민소송 건수	소송종결(주민패소)	소송종결(소 취하)	2심계류	3심계류
2007년~2011년	10	1	3	12
총합	26			

출처: 행정안전부

- 개선사항 :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제도를 만들어 주민소송이 지방행정의 부정부패와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사법제도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별첨참고 : 전국 주민소환 추진사례(2007년~2011년)

〈표〉 주민소환 추진사례( '11.12.31 기준)

구 분	일 시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지 역	소환대상 (48명)	추진사유	추진상황
추진중 (1명)	'11.12.1	전남 구례	군 수	뇌물수수혐의로 인한 구속으로 장기간 행정공백 발생 등	서명요청활동 중
투표 실시 (6명)	'11.7.19	경기 과천	시 장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	투표실시(11.16) (투표율 17.8%, 소환 무산)
	'09.5.13	제주특별 자치도	도지사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	투표실시(8.26) (투표율 11%, 소환 무산)
	'07.9.21	경기 하남	시 장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투표실시(12.12) (투표율 31.1%, 소환 무산)
	'07.9.21	"	시의원	"	투표실시(12.12) (투표율 23.8%, 소환 무산)
	'07.9.21	"	시의원	"	투표실시(12.12) (투표율 37.6%, 소환)
	'07.9.21	"	시의원	"	투표실시(12.12) (투표율 37.6%, 소환)
미투표 종 결 (41명)	'11.8.25(1차) '11.9.27(2차)	부산 영도	구청장	고가도로 건설 찬성 및 절영산책로 유실로 인한 주민피해	- 대표자증명신청취하(8.31) - 서명부 미제출(12.1)
	'11.9.22	경기 남양주	시 장	민자도로 통행료 검증 미비로 재정부담가중 등	대표자증명신청취하(9.28)
	'11.9.6	경기 시흥	시의원	지역주민의견 무시 및 독선 등	서명부 미제출

'11.8.16	서울	시장	서민 혈세 낭비 및 시의회 출석거부, 주민투표 강행 등	소환대상자 사퇴(8.29) 종료
'11.7.26	경기 과천	시의원	보금자리 주택사업 반대로 사업지연	서명부 미제출
'11.7.26	"	시의원	"	"
'09.5.11	강원 춘천	시의원	동료의원 폭행 등	청구제한기간도래(7.1)로 종료
'09.4.30	전북 전주	시장	시의원 비서채용의 부적절성 등	"
'09.4.30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
'09.2.12	충북 충주	시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등	서명부 미제출
'09.1.28	인천 연수	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조정 문제해결 기피 등	"
'09.1.21	전북 전주	시장	자질부족, 오만과 무지 등	"
'09.1.20	강원 인제	군수	공약 미이행, 방만한 군정운영 등	"

출처: 행정안전부

※ 별첨참고 : 전국 주민소송 실시 사례(2006년~2011.8.31)

〈표〉 주민소송 실시 사례( '11.8.31 기준)

추진지역	소송제기일	소송요지	진행상황 및 결과
서울강동	'10.8.10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2심 계류(1심 주민승소)
서울용산	'10.5.20	"	3심 계류(1심 주민승소, 2심 주민패소)
서울성북	'10.3.23	"	3심 계류(1심 주민승소, 2심 주민패소)
서울강북	'10.2.22	"	3심 계류(1심 주민승소, 2심 항소기각)
서울강서	'10.2.22	"	2심 계류(1심 주민승소)
서울동작	'10.2.22	"	3심 계류 (1심 주민승소, 2심 항소기각)
서울은평	'10.2.22	"	3심 계류(1심 주민승소, 2심 주민패소)
전남여수	'09.7.14	여수2청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교환시 절차상 위법성	3심 계류(1심 주민패소 2심 항소기각 )
서울서대문	'09.4.28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3심 계류(1심 주민일부승소, 2심 항소기각 )
서울성동구	'08.12.24	"	3심 계류(1심 주민승소, 2심 주민패소)
서울양천구	'08.11.20	"	3심 계류(1심 주민승소, 2심 주민일부승소)
서울금천구	'08.11.20	"	3심 계류(1심 주민승소, 2심 주민패소)
서울도봉	'08.5.28	"	3심 계류(1심 주민승소, 2심 주민패소)

경기의정부	'08.1.8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금 과다지급으로 의정부시 예산낭비	2심 계류(1심 각하)
경기성남	'06.5.25	확장된 탄천변도로 일부구간 (0.27km)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비행안전구역) 예산낭비	3심 계류 (1심 각하, 2심 항소기각)
서울관악	'09.10.20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요구	종결(주민패소)
서울동대문	'09.8.7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요구	종결(주민패소)
서울구로	'09.8.7	“	종결(주민패소)
경기수원	'07.9.3	수원시 공무원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불법지급	종결(주민패소)
강원 원주	'07.8.1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종결(주민패소)
충남청양	'07.4.23	군수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및 불법공사 추진으로 예산낭비	종결(주민패소)
인천부평	'06.12.11	구청장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종결(주민패소)
인천부평	'06.10.10	구의회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종결(주민패소)
서울성북	'06.9.13	구의회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종결(주민패소)
충남서천	'06.8.31	군수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종결(주민패소)
경기광명	'06.7.24	신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예산 낭비	종결(1심 중 소 취하)

[3-4-3]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패기록 등 공개 강화

부 문	정치부문	항 목	3-4.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및 부패기록 등을 공개함으로써 후보적격자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계획을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계획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간계획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선거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선거법」 제49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 개정을 통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함께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 중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5조 (선거공보)]</li> </ul> <p><b>제49조(후보자등록 등&lt;개정 2000.2.16, 2011.7.28&gt;)</b></p> <p>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p> <p><b>제65조(선거공보) ⑦</b>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접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p>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접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개정 2006.3.2, 2010.1.25>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

## 4. 기업부문

---

4-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4-2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

4-3 기업의 윤리경영 기반조성

---

4-4 공기업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

---

## 4-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4-1-1 회계 투명성 증대

---

4-1-2 비자금 조성 억제

---

4-1-3 기업 공시제도

---

[4-1-1] 회계 투명성 증대

부 문	기업부문	항 목	4-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한 성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한 엄정한 제재 필요성 강조</li> <li>객관적 자료 분석 과정 부재</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회계사 인력, 회계자료 작성, 회계기준, 외부 감사인 등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추진방안 마련, 기업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까지 고려하여 영역별로 방안 수립</li> <li>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방안을 수립한 계획목적과 근거 부재</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자료 작성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없음</li> <li>회계자료 작성 단계 이후의 단계별 구체적 계획에 관한 논의 없음</li> <li>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부분에서 의무사항과 제재에 관한 구체적 방안 없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등</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관련 제도개선 권고(별첨 참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지원업체 사후관리 및 위탁기관 통제강화,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권고</li> </ul> </li> <li>기업의 전체 업무에서 발생하는 회계 처리의 절차와 과정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정공시제도(FD: Fair Disclosure) 도입(200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2009.3)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시행(공정거래위원회)</li> </ul> </li> </ul>		

- 상장기업 등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을 위해 공시제도와 공시서류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기업공시 실무안내서’ 발간(금감원, 2011.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감사인의 권한(별첨 참고)
  - 주요내용
    - 1980. 제정 당시 회사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을 2001년(제9차 일부개정)에 관계회사와 계열회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감사인의 직무 수행을 구체화함
    - 2010년(제17차 일부개정)에는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자료 제출 요구, 감사관련자료의 제출 권한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의 감사계약 해지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권한을 확대함(제3, 4, 5항 신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 4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별첨 참고) 법률 마련[본조신설 2009.3.25]

※ 별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9.3.25]

####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별첨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가청렴위원회, 2006.2.28) 주요내용

- 대상기관: 산자부·노동부·해수부·정통부·농림부·문광부·환경부·건교부·과기부·복지부·여성부·중기청·특허청

##### 1.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① 심사평가기준 공개 및 평가항목 객관화
  - 세부평가기준: 기업평가표, 평가항목별 기준 및 평가등급산정기준 등
- ② 지원결정권자의 전결권한 합리적 축소 및 이해관계자 배제
- ③ 지원대상업체 심의기구의 실효성 확보
- ④ 지원업체 명단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 2. 지원업체 사후관리 및 위탁기관 통제강화

- ①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체제 구축, ② 지원업체의 외부회계감사 활성화 유도, ③ 위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감사 실시, ④ 위탁기관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 3.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 ① 부실채권 원인분석 및 감축방안 강구 -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② 대출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등 책임규명 강화 - 관련직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신분상 제재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과방안 강구
- ③ 기술개발 출연사업의 실패기준 명확화 - 성실실패와 불성실실패의 개념 명확히 규정, 불성실실패의 경우 지원자금 회수조치, 지원참가제한, 형사고발 등의 제재기준을 마련

4.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

- ① 정책자금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 ② 지원기관간 정보공유체제 구축 및 중복지원 최소화
- ③ 지원금리 차등화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적용 - 중소기업 신용도 및 지원기간별로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금리를 차등화하여 부실 중소기업 퇴출지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 ④ 지원 중소기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 별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감사인의 권한

제정 1980.12.31 법률 제3297호	제9차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7호	제17차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와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③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8.1.8, 2001.3.28>

②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관련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1998.1.8, 전문개정 1993.12.31>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중

		<p>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⑤ 감사인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p>
--	--	--

[4-1-2] 비자금 조성 억제

부 문	기업부문	항 목	4-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 발견됨에 따라 비자금 조성 억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조사 과정 철저한 조사, 금융거래와 법인카드 사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계획</li> <li>예방적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목적과 범위의 적절성 부족</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의 엄정한 추징, 무자료·차명금융거래 및 무기명 법인카드 사용 억제방안 강구</li> <li>세무조사에 관한 구체적 추진계획 없음</li> <li>법인카드 사용 억제방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없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금관리법</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국가청렴위원회, 2007.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국고금관리법 제24조, 2002.12.30 제정: 별첨 참고)</li> <li>2006.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노력 강화하고 있음</li> <li>2007. 공공기관 법인카드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07.10.18)를 각급 행정기관 등 968개 공공기관에 권고함</li> <li>2008.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2008.4.31)과 세출예산 집행지침 마련</li> </ul> </li> </ul>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 방안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모니터링 하도록 추진(2008.4.31 실시)
-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2011.12): 별첨 참고)
  - 주요내용: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등

※ 별첨 : 「국고금관리법」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정 2002.12.30 법률 제6836호	일부개정 2011.4.4 법률 제10526호
<p>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p> <p>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p>	<p>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p> <p>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p>

<p>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11.4.4]</p>
---	---

※ 별첨 :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1.12)

1.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등 사용금지 업종 추가(예산집행지침으로 규정)
2.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물품 구매 제한(자율적으로 내부기준 반영)
3.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예산집행지침으로 규정)
  - ①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 사용 제한
  - ②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구입 내역, 수령인, 수령 여부 등을 지출결의서 또는 물품 수불부에 기재)
4.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 ① 클린카드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횟수 확대(예산집행지침으로 규정)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연1회 공시하고 있으나 월별로 공개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102개 중 87개 공직유관단체가 월별 공개 방법 시행 중)
  - ② 기관장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 임원으로 확대

③ 카드 집행내역 공개 시 인센티브

5.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2. 6월말 조치기한): 공직유관단체 예산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①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

②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중 착안사항이 1~2개에 불과한 경우 모니터링 착안사항을 추가로 시스템에 반영

③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분야 발굴 확대

6.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① 클린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 사용 방지방안 교육 실시

②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 징계, 환수 등 엄격한 제재조치 강구

- 정부기관의 경우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부과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사규 등에 징계·환수(징계부과금) 근거 마련

[4-1-3] 기업 공시제도

부 문	기업부문	항 목	4-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b>(별첨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공정거래위원회, 2009.7.8). 공시시기·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 제정</li> <li>- 전자공시시스템 전산망(DART)를 이용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분기 또는 연1회 공시사항을 공시 (대상: 2009.7 기준 1,154개 대기업, 2012.3 기준 1,667개)</li> <li>- 기업스스로 자기책임하에 소유구조·경영정보 등을 공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 지배구조 관련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특징.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정보를 보여주어 회사간·집단간 비교가 가능하고 건별 공시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달리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총량을 공시토록 하고 있어 연도별 추세 파악이 가능</li> </ul> </li> <li>•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b>」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별첨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8.3. 제정 당시 업무보고서(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12개월간) 제출, 공시서류 기재사항, 경영상황 공시의 조항을 명시</li> <li>- 2009. 업무보고서 제출 외에 매월 업무내용을 보고하도록 제4항을 신설함</li> </ul> </li> <li>• 「<b>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b>」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별첨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 본 조항을 신설하여 내부거래 공시에 관하여 주요내용과 규정을 명시</li> <li>- 2007. 이사회 의결 조건을 구체화함(제5항 신설)</li> <li>- 2004.12.31.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2009.3.25.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를 신설하여 공시 사항·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함</li> </ul> </li> </ul>		

※ 별첨 :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주요 공시항목과 공시내용

- **주요 공시항목:**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등 4개 항목

- **주요 공시내용**

1. 기업집단 일반현황

- ①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 ②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 ③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 ④ 해외계열회사 현황
-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2.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 ①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 ②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3. 주식소유현황

- ①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 ②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 ③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매트릭스 형태로 공시)

4.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 ①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 ②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③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 ④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⑤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 ⑥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 ⑦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 ⑧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 ⑨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 ⑩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 ⑪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별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제15차 일부개정 2011.08.04 법률 제11040호
<p>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금융투자업자는 부실채권 또는 특별손실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2008.2.29&gt;</p> <p>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lt;개정 2008.2.29&gt;</p> <p>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lt;개정 2008.2.29, 2009.2.3&gt;</p> <p>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t;신설 2009.2.3&gt;</p> <p>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p>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	---------------------------------------

※ 별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본조신설 1999.12.28,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제21차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51호	제41차 일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406호 시행일 2012.6.22
<p>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lt;개정 2002.1.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li> <li>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li> <li>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li> </ol>	<p>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lt;개정 2002.1.26, 2007.4.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li> <li>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li> <li>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li> </ol>

<p>래하는 행위</p> <p>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p> <p>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2.28]</p>	<p>래하는 행위</p> <p>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p> <p>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lt;개정 2007.8.3&gt;</p> <p>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p>
---	---

	<p>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lt;신설2007.8.3, 본조신설1999.12.28&gt;</p>
--	---

※ 별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본조신설 2004.12.31]

-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07.4.13, 8.3>
  -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본조신설 2009.3.25]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2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

4-2-1 외부통제 강화

---

4-2-2 내부통제체제 강화

---

[4-2-1] 외부통제 강화

부 문	기업부문	항 목	4-2.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시장의 자율성 및 자본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청렴성 제고 필요성 인식</li> <li>기업부문에서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왜 중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분석 없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여 영역별로 기업의 청렴성을 공정하게 평가·공표할 수 있도록 평가 모델 개발·도입 권고</li> <li>기업의 청렴성 평가를 위해 영역별로 평가 모델을 개발·도입하도록 권고했으나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부재</li> </ul>		
계획의 구체성	<p>&lt; 세부 추진사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뇌물공여 등 비리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등 시장퇴출 촉진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퇴출 촉진방안 검토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계획 부재</li> </ul> </li> <li>② 접대문화 근절을 위해 법인카드 발급·사용시 실명 기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명 기록 의무화에 관하여 시간적 계획과 구체적 절차 계획 부재</li> </ul> </li> <li>③ 사업자 단체의 담합행위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처벌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 대상, 담합행위에 대한 기준 등 세부 계획 부재</li> </ul> </li> <li>④ 각종 협회, 조합, 연구소 등의 부패방지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기관·감독기관을 통해서 개선대책 마련</li> <li>- 부패방지방안의 구체적 추진사항 부재</li> </ul> </li> </ul>		
관련 법령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li> </ul>		

정책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 제정 당시 제12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명시</li> <li>- 2002년(제21차 일부개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규정을 구체화함</li> <li>- 2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신설함(별첨 참고)</li> <li>- 1984.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 속하는 공공기관들 전반을 아우르는 법으로 제정함</li> <li>- 1980. 제정 당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행위를 명시하였고 1996년, 1999년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과 규약에 관하여 개정함(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별첨 참고)</li> </ul> </li> </ul>

※ 별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제21차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51호	제41차 일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406호(시행일 2012.6.22)
<p><b>제1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b>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이하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그 신청사항에 변경을 가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불황극복·산업합리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사업자가 이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b>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함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lt;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gt;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p>	<p><b>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b>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함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lt;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gt;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p>

	<p>하는 행위</p> <p>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p> <p>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p> <p>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p> <p>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p> <p>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t;신설 1996.12.30&gt;</p>	<p>하는 행위</p> <p>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p> <p>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p> <p>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p> <p>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p> <p>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p>
--	---	--

	<p>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 1996.12.30, 1999.2.5&gt;</p> <p>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p> <p>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p>	<p>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p> <p>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t;신설 1996.12.30&gt;</p> <p>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 1996.12.30, 1999.2.5&gt;</p> <p>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p>
--	--	---

	<p>다.&lt;개정 1992.12.8&gt;</p>	<p>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p> <p>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lt;개정 2007.8.3&gt;</p> <p>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lt;신설 2007.8.3&gt;</p> <p><b>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b></p>
--	-------------------------------	--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lt;개정 2009.3.25&gt;</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p>
--	--	---

**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한 행위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상품의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p>질 또는 량을 속이는 행위</p>	<p>6. 삭제&lt;1999.2.5&gt;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개정1996.12.30&gt;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lt;개정 1999.2.5&gt;</p>	<p>하는 행위  ⑥ 삭제&lt;1999.2.5&gt;  ⑦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⑧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개정1996.12.30&gt;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p>
-----------------------	--	--

	<p>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lt;개정 1999.2.5&gt;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	--	---

[4-2-2] 내부통제 체제 강화

부 문	기업부문	항 목	4-2.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경영진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벌칙 강화 등 기업 내부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 인식</li> <li>현황 파악이나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 분석 과정 부재</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적 측면(기업 내부 고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적 차원에서의 계획일 뿐이며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의 계획 부재</li> </ul> </li> <li>구조적 측면(주주, 이해관계인, 경영진 등 내부 지배구조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파악과 문제점 제시, 핵심이슈 부재</li> </ul> </li> <li>교육적 측면(경영진 교육)의 세 가지 영역으로 계획 수립</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적 측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주, 이해관계자, 경영진 간의 상호견제·균형 시스템 확립</li> <li>교육적 측면: 경영진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벌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 가지 영역에 관한 과제별 시간계획과 세부 추진사항 제시 모두 부재</li> </ul> </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li> <li>상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내부통제를 어떠한 수준으로 설계·운영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체제를 미구축하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때에 이사회(이사), 경영진의 책임문제가 어떠한지 분명하지 않음</li> <li>금융관련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이사)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은행법 제 23조 제1항)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금융투자업규정 별표6 제1호)</li> </ul>		

<b>과제별 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관련 법률」(2002~현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금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신고자 및 친족 등 신분보호와 보상</li> </ul> </li> <li>• <b>신고자 보호제도</b>(부패방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시행</li> <li>- 2005년과 2007.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가 더욱 강화됨</li> <li>- 2008.8.18~11.1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li> <li>- 관계부처 의견조회(2008.12.5~2008.12.15) 및 입법예고(2008.12.22~2009.1.12)</li> <li>-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법률안 확정 2009.10.29 국회 제출</li> <li>-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9.12.1 발의</li> <li>- 1차 법안심사(2010.4.19), 공청회(2010.4.26), 2차 법안심사(2010.6.24), 제3차 법안심사(2010.9.13), 제4차 법안심사(2010.11.25) 개최</li> <li>- 2010. ‘협조자 보호강화’, ‘보호 조사 불응 금지의 명확화’, ‘보호대상에 신고내용 소관 공공기관 신고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li> </ul> </li> <li>• <b>공익신고자 보호제도</b>(국민권익위원회, 20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11.3.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별첨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제11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제14조 책임의 감면,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li> </ul> </li> </ul> </li> </ul>
---------------	---

② 2011.9.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별첨 참고)

-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신고 사항을 공공기관에 송부(제10조 공공기관 송부),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해제 등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4조 신변보호조치)

- 2011.11.16.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210건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2012.2월까지 16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국적인 설명회를 개최

- 설명회 개최 권역: ①서울 ②인천 ③경기 ④대전·충남 ⑤충북 ⑥강원 ⑦대구·경북 ⑧부산·울산·경남 ⑨광주·전남 ⑩전북 ⑪제주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10684호]

- 2010.12.31.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2013.12.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내부통제제도: 기업의 경영효율성, 회계신뢰성, 법규준법성 등을 확보·제고할 목적으로 경영자가 구축해 운영하는 기업내부 시스템

- 국내의 내부통제제도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본조신설 2003.12.11](별첨참고)

② 금융법 준법감시인제도(2000년 도입):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본조신설 2009.7.31](별첨 참고)

③ 「상법」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본조신설 2011.4.14](별첨 참고)

– 준법지원인제도(2011년 개정, 일반상사회사 대상)

• 「은행법」

– 2002.4.27. 제23조의3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요건에 관해 명시함(별첨 참고)

– 2010.5.17. 제23조의4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을 신설하여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성과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대함

※ 별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72호]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

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별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 2011.9.30 대통령령 제23198호]

#### 제10조(공공기관 송부)

-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신변보호조치)

- ① 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별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정 1980.12.31 법률 제3297호	제9차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7호	제17차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p>직전사업연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 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다.&lt;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gt;</p>	<p>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p> <p>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p> <p>[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12.1.1]</p>
--	--	--

※ 별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차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본조신설2003.12.11]

-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 포함)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동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2009.2.3]

### 제2조의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본조신설2003.12.11]

- ①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표명(表明)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09.2.3]

※ 별첨 :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본조신설 2009.7.31]

#### 제14차 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61호

①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정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제47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의 준수, 위험 관리 및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첨 : 「상법」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본조신설 2011.4.14]

#### 제20차 일부개정 2011.5.23 법률 제10696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 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⑧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⑫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첨 : 「은행법」 제23조의3 내부통제기준 등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본조신설 2000.1.21])

제20차 일부개정 2002.4.27 법률 제6691호	제30차 일부개정 2011.9.16 법률 제11051호
<p>①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p> <p>③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2002.4.27&gt;</p> <p>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lt;신설 2002.4.27&gt;</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p>	<p>①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p> <p>③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에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lt;개정 2011.7.21&gt;</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p>

<p>있는 자</p> <p>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p> <p>2.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 2002.4.27&gt;</p>	<p>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 이상 지난 자</p> <p>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3.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17]</p>
--	---

※ 별첨 : 「은행법」 제30차 일부개정 2011.9.16, 법률 제11051호[본조신설 2010.5.17]

#### 제23조의4(지배구조내부규범)

- ① 은행은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성과평가 등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제정·변경한 내용
  - 2. 은행이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

## 4-3 기업의 윤리경영 기반조성

---

[4-3] 기업의 윤리경영 기반조성

부 문	기업부문	항 목	4-3. 기업의 윤리경영 기반조성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정책의 원칙 및 제도의 잦은 변경에 대하여 정책의 원칙 및 제도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기업윤리 실천 강령 개발·도입 필요성을 인식</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준칙 매뉴얼 「기업윤리 실천 강령」, 준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등의 세 가지 제도적 방안 검토</li> <li>제도적 방안만을 고려하여 포괄성 부족</li> <li>부패기업 현황 파악이나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 분석 과정 부재</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윤리 실천강령」, 준법 프로그램의 개발·도입·배포·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시간 계획 제시 부재</li> <li>인센티브 현황과 대상 선정·지급 기준 등의 세부 추진사항 제시 부재</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li> <li>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별첨 참고)에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제1항(별첨 참고)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 이사회를 결정할 권한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국내의 상법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으며(상법 제393조 제1항: 별첨 참고), 이사 및 집행 임원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함</li> </ul> </li> </ul>		

<b>과제별 성과</b>	<p><b>[1] 과제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부패방지 및 기업윤리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정보 수집, 위원회 내에 기업윤리센터 개설(부패방지위원회, 2004.6.28)</li> <li>• 2009. 금융권에서만 시행중인 준법감시인제도를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국민권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도가 낮은 기관이나 부조리 빈발기관, 보조금·출연금 부당집행 기관을 중점 평가기관으로 선정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li> </ul> </li> <li>• <b>공직자 행동강령</b>(부패방지위원회, 2003.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3. 공무원행동강령 초안 마련, 제정 및 시행토록 권고</li> <li>2002. 11. 입법예고, 12월 법제심사</li> <li>2003. 2. 심의 및 의결, 2.18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공포</li> <li>2003.5.19. 전면 시행</li> <li>2005.12.29, 2008.11.5, 2008.12.31 3차례에 걸쳐 개정됨</li> <li>- 각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적 내용을 담은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하여 일제히 시행</li> <l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2.17 법률 제11327호]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8조에서 공직자 행동강령(부패방지위원회, 2002 제도개선 권고)을 명시(별첨 참고)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제17906호),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함.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행동강령의 제정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li> </ul> </li> <li>•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04.9)에 의해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자율적</li> </ul>
---------------	--

제정 및 시행

- 2005. 7. 부패방지법 제8조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공무원에서 공직자로 확대 및 시행됨으로써 공직 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의 법적근거 마련
- 2006. 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및 개정 요청
- 2006.6.1.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 2008.12.3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표준안)이 포함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전면 개정
- **청렴교육**(국민권익위원회, 2003~현재)
  -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정책을 추진할 핵심요원 양성을 목표로 2003년부터 서울시교육연수원 등 타기관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자체 교육관 마련 및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법률[본조신설 2009.2.3](별첨 참고)에 의거, 공직유관단체 내부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2003),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2004) 등을 사용하고 있음

[2] 제도개선 권고

-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 권고**(국가청렴위원회, 2005)
  1.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통제 역량 강화 개선방향 제시
    - 임원 선임과정 개편
      - ①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 및 기준 명확화 필요

- ②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 ③ 청렴성 검증을 위해 부방위 협의절차 신설
- ④ 산하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 동안 임원으로 재취업 금지규정 마련
- ⑤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에서 투자기관장으로 이양

2.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강화 방안

- ①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도입
- ② 승진심사위원회에 감사실장 참여
- ③ 13개 투자기관의 ‘징계양정기준’ 과 부방위에서 권고한(2004.9.3)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 을 통합하여 ‘표준안’ 을 마련
- ④ 외무제공업체에 대한 이원화된 처벌기준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
- ⑤ 뇌물금액 등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기준 마련
- ⑥ 주요사업의 경우 집행과 자금관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상호견제장치 마련

3.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개선방향 제시: 업무추진비 및 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감독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행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09)**

- ①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요청 금지 및 감사공모제 확대
- ② 감독기관 퇴직자와의 업무유착 방지기준 마련
- ③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기준 강화방안 마련

※ 별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2008.02.29 법률 제8878호	제4차 일부개정 2012.2.17 법률 제11327호
<p>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li> <li>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li> <li>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li> <li>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li> <li>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li> <li>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li> <li>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별첨 : 「공직자윤리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20호[본조신설 2009.2.3]  
제34차 일부개정 2011.12.31 법률 제11141호(시행일 2012.9.1)

###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정 1980.12.31 법률 제3297호	제9차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7호	제17차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p>직전사업연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gt;</p>	<p>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li> <li>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li> </ol> <p>[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12.1.1]</p>

※ 별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본조신설2003.12.11]

-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09.2.3]

※ 별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2.1.6 대통령령 제23496호[본조신설2004.4.1]

### 제2조의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 ① 주식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법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감사인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질문, 관련 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09.12.31]

※ 별첨 : 「상법」 제393조 이사회에 관한

제2차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4호	제11차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5호	제20차 일부개정 2011.5.23 법률 제10696호
<p>①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에 결의로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전문개정 1984·4·10]</p>	<p>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에 결의로 한다.&lt;개정 2001.7.24&gt;</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p> <p>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lt;신설 2001.7.24&gt;</p> <p>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t;신설 2001.7.24&gt; [전문개정 1984.4.10]</p>	<p>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에 결의로 한다.&lt;개정 2001.7.24&gt;</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p> <p>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lt;신설 2001.7.24&gt;</p> <p>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t;신설 2001.7.24&gt; [전문개정 1984.4.10]</p>

---

## 4-4 공기업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

4-4-1 부패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

4-4-2 투명성 제고

---

[4-4-1] 부패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부 문	기업부문	항 목	4-4. 공기업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한 인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기업 운영의 자율성 제고 인식</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적 측면(감사위원회제도), 평가적 측면(경영평가), 운영적 측면(공기업 자율성),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 설정</li> <li>세 가지 영역으로 계획 수립 범주를 설정하여 계획 범위가 적절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제도 활성화,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 마련</li> <li>부정부패 척결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li> <li>공기업 운영 자율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기관의 업무지시에 대한 기록 및 공개를 통한 경영간섭 통제</li> <li>정부정책의 잦은 변경 지양, 실적에 따른 기관장 연임보장</li> </ul> </li> <li>세 가지 계획 모두 방안 제시만 있을 뿐 과제별 시간계획이나 세부 추진사항 제시 부재</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은행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li> </ul>		
과제별 성과	<p>[1] 제도개선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기준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1.12)</li> </ul> <p>1. 자치단체장의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급률 결정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 우려되어 성과급 지급률 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방안 제</p>		

시(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반영, 조치기한 2012.8.31)

2.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으로 인하여 이행실적평가의 객관성·공정성에 한계 발생에 따라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평가부서장은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 겸직 제한(조치기한 2012.8.31)

## [2] 관련 제도 및 법률 성과

- 「상법」 (별첨 참고)

- 2009.1.30.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수행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하여 명시함, 1999.12.31 신설한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에는 대표자 선정과 위원 규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은행법」 (별첨 참고)

- 2000.1.21. 제23조의2 감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감사위원회 구성, 위원 요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10.5.17. 본 조항을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전문개정하여 상임감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함

- 제23조의3 내부통제기준의 경우 2000.1.21. 본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0.5.17. 준법감시인 임면과 요건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함

- 2010.5.17. 제23조의4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신설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시 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제24조 임원(별첨 참고),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32조 임원의 직무 등)</li> <li>- 2007.1.19. 제정 당시 「상법」에 근거하여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별첨 참고)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li> </ul> </li> </ul>
--	---

※ 별첨 :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일부개정 2011.5.23 법률 제10696호[본조신설 2009.1.30]

-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1.4.14>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

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1.4.14>

※ 별첨 : 「상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정 1962.1.20 법률 제1000호[본조신설1999.12.31]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5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20차 일부개정 2011.5.23 법률 제10696호</p>
<p>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p> <p>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li> <li>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li> <li>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li> <li>4.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li> <li>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li> <li>6. 회사와 거래관계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li> </ol>	<p>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p> <p>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lt;개정 2009.1.30&gt;</p> <p>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p> <p>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p> <p>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 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t;신설 2009.1.30&gt;</p> <p>⑦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 2 제2항·제394조 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p>

<p>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p> <p>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p> <p>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p> <p>⑥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 제2항·제394조 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 제1항 제9호·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 제1항 제9호 및 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p>	<p>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 제1항 제9호·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 제1항 제9호 및 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본조신설 1999.12.31]</p>
--	--

※ 별첨 : 「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차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30차 일부개정 2011.9.16 법률 제11051호</p>
<p><b>제23조의2(감사위원회)</b></p> <p>①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p> <p>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p>	<p><b>제23조의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b></p> <p>① 은행은 이사회에 「상법」 제415조의2(별첨 참고)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li> <li>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li> </ol>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임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해당 은행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2. 해당 은행의 대주주(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li> </ol>

<p>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00.1.21]</p>	<p>3. 해당 은행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p> <p>4. 그 밖에 해당 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상임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2010.5.17]</p>
<p><b>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등)</b></p> <p>①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p>	<p><b>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b></p> <p>①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p>

<p>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0.1.21]</p>	<p>한다.</p> <p>③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lt;개정 2011.7.21&gt;</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p> <p>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3</p>
---	--

	<p>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 이상 지난 자</p> <p>2.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3.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7]</p>
--	--

※ 별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정 2007.1.19 법률 제8258호	제9차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896호
<p>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p>	<p>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p>

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9.12.29>

※ 별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임원

제정 2007.1.19 법률 제8258호	제9차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896호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p> <p>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p> <p>③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p> <p>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p> <p>③ 공기업 상임이사와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lt;개정 2009.12.29&gt;</p> <p>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준정부기관 이외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p>

	<p>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lt;신설 2009.12.29&gt;</p> <p>⑤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lt;신설 2009.12.29&gt;</p>
--	--

[4-4-2] 투명성 제고

부 문	기업부문	항 목	4-4. 공기업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평가부문	평가 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제도 개선과 공정한 경영평가 시행 필요성 인식</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운영 · 민원처리, 조달체제, 예산 · 회계,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를 설정</li> <li>비교적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세 가지 영역만을 범주로 설정한 이유와 핵심 쟁점사항 제시 부재</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한 인사기준 · 절차 마련과 인사결과 공개, 실천적인 행동강령 제정 · 시행, 내부고발 · 부패신고 활성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정비,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도입</li> <li>인터넷을 통한 사업 · 구매 발주내역 및 예산 공개, 전자조달 시스템을 전 부문으로 확대 도입, 자회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제한, 사업발주 · 설계변경 심의에 시민참여 확대</li> <li>회계기준 · 회계감사제도 개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공시자료 표준화 등 경영공시제도 개선, 합리적인 회계관리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운영 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 제시 부재</li> </ul> </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li> </ul>		
과제별 성과	<p>[1] 과제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방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 부패방지 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실시</li> <li>평가내용: 공통시책평가(반부패 인프라 구축 · 운영,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li> </ul> </li> </ul>		

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자율시책평가(기관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실적, 반부패 수범사례,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정책투명성 진단 등)

- 평가대상: 2012. 1. 기준, 중앙행정기관(39개),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20개), 시도교육청(16개), 공직유관단체(공기업 27개, 기타공직유관 90개) 총 208개

• **공공기관별 청렴도 측정(2002년~현재)**

- 대상: 민원인을 상대하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청렴수준을 주로 측정
-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국민권익위원회, 2010년)

• **맞춤형 청렴컨설팅(2006년~현재)**

-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정책 지원서비스, 맞춤형 청렴컨설팅 실시
- 선정기준: 청렴컨설팅 신청기관 중 최근 3년간 부패발생이 잦거나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을 우선대상기관으로 선정함
-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정책의 문제점과 부패발생의 원인을 진단하여 부패근절 전략 및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2008년 71개 기관(83.5%), 2009년 92개 기관(88.5%), 2010년 144개 기관(74.6%)

[2] 관련 제도 및 법률 성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별첨 참고)

- 2007.1.19. 제정 당시 회계처리의 원칙을 명시하였고(제39조 회계원칙 등), 제11조(경영공시)는 2011년 제9차 일부개정에서 공공기관의 공시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을 구체화함.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제12조 통합공시에 명시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첨 참고)

- 제2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정 2007.3.27], 제26조의2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본조신설 2010.3.26]

※ 별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회계원칙 등

제정 2007.1.19 법률 제8258호	제9차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896호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p> <p>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p> <p>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08.2.29&gt;</p>

※ 별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19 법률 제8258호	제9차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896호
<p><b>제11조(경영공시)</b></p> <p>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p><b>제11조(경영공시)</b></p> <p>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p>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li> <li>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li> <li>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li> <li>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li> <li>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li> <li>6.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li> <li>7.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8. 감사의 감사보고서</li> <li>9.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li> <li>10.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li> </ol>	<p>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lt;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li> <li>2. 결산서</li> <li>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li> <li>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li> <li>5.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li> <li>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li> <li>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li> <li>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li> <li>9.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li> <li>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li> </ol>
--	--

<p>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p> <p>13.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2조(통합공시)</b></p> <p>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p>	<p><b>제12조(통합공시)</b></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p>

<p>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할 수 있다.</p> <p>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할 수 있다.&lt;개정 2008.2.29&gt;</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lt;개정 2008.2.29&gt;</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lt;개정 2008.2.29&gt;</p> <p>④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별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78호	타법개정 2011.10.14 대통령령 제23221호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에서 4명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 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⑥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p>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lt;개정 2010.3.26&gt;</p> <p>③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 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⑥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p>

<p>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p> <p>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lt;개정 2010.3.26&gt;</p>
--	--

※ 별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10.3.26]

**제26조의2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원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 5.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부문

---

5-1 반부패 윤리기반 확립

---

5-2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실시

---

5-3 국민참여 촉진을 위해 반부패 홍보강화

---

5-4 국제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

---

## 5-1 반부패 윤리기반 확립

---

5-1-1 사회전반의 윤리규범 확립

---

5-1-2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5-1-1] 사회전반의 윤리규범 확립

부 문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항 목	5-1. 반부패 윤리기반 확립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델로 하여 정치인, 법조인, 의사, 회계사 등 전문 분야별로 실천적인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유도</li> <li>• 공직자 행동강령은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준수 및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및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손상행위를 금지하는 것</li> <li>•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행동강령의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전반의 윤리규범 확립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행동강령의 도입을 계획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의 도입과 확산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전반에 윤리의식의 확대를 계획함</li> <li>• 그러나 민간부문의 행동강령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역시 선언적 의미가 강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강령 위반유형별 현황(2004년 842건→2010년 1,43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수수, 목적 외 예산사용, 알선청탁, 외부강의, 공용물 사적사용, 금전차용 등</li> </ul> </li> <li>• 처분유형별 현황(2004년 파면 27건→2010년 130건)</li> </ul>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등
- 2010.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 이후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조례 10개 자치단체(경북 청도, 울진, 울릉, 전남 여수, 임실, 경기도 의정부, 연천, 충북 진천, 인천 계양구, 광주 남구 등)
  - 규칙 221개 자치단체
  - 훈령 4개 자치단체(강원 동해, 전남화순, 경남 창녕)
  - 예규 4개 자치단체(충남 보령, 전북 군산, 정읍, 전남 여수)
- **공무원 행동강령**
  - 2003.2.18.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  
2003.5.19. 시행
  - 2003.5.19.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 국회 제외한 모든 헌법기관도 9월 이후 시행
  - 2005.12.9, 2008.11.5, 12.31 개정
  - 2010.11.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2004. 9. 위원회 권고로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자율적 제정·시행
  - 2005. 7.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공직자로 행동강령 확대
  - 2006. 4.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요구하여 사규형태로 시행
- 2004년 비해 위원회의 모니터링 기능이 향상되어 적발건수와 처리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조례와 규칙으로 제정된 경우가 총 231개 자치단체

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적 효력이 없는 예규와 훈령으로 구성된 자치단체도 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 관련 운영현황**

-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안 심사(2011년 31개 기관 심사)
- 행동강령 우수사례 발굴·확산(2011년 286건 중 5건 선정)
- 행동강령 상담(2004년 37건→2011년 289건)
- 행동강령 교육실시(2011년 62회)
- 행동강령 각종 자료 제작보급
- 행동강령 책임관련찬회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 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

[5-1-2]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부 문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항 목	5-1. 반부패 윤리기반 확립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li> <li>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부패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추방을 위한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함</li> <li>계획이 포괄적이며,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적 참여와 연계를 포함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언론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의 개최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마련함</li> <li>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항 없음</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 반부패전국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부패방지 운동을 일관성 있게 진행함</li> <li>국민권익위원회 주최의 민간공모사업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를 지원함</li> <li>2007. 「반부패전국네트워크」 구성하고, 해당 관련자가 국민권익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li> <li>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국 23개 부패방지시민센터가 연대하여 구성하였으며, 전국의 약 2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함</li> <li>주요활동으로는 반부패 정보공유 및 상호활동격려, 부패문제 인식확산을 통한 참여역량강화, 지역 부</li> </ul>		

	<p>패세력 척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 파수꾼 역할 및 건설적 반부패 대안 마련, 자체적 성찰을 통한 도덕성과 청렴성 유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민간공모사업을 실시함(사업별 1,000~3,000만원)</li> <li>• 2012년의 경우 지정과제 2개과제와 자율과제 9개 과제를 제시하여 공무사업을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과제(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내실화,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준수활성화)</li> <li>- 자율과제(반부패 인식확산, 반부패 민관협력, 자치단체 예산낭비 근절, 본지분야 윤리경영, 건전한 경조문화, 지역토착비리 근절 등)</li> </ul> </li> <li>• 2011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사업을 통해 복지 1개 단체, 교육 3개 단체, 정치 1개 단체, 기타 1개 단체 등 총 6개 단체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국민권익백서)</li> </ul>
--	--

---

## 5-2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실시

---

5-2-1 반부패 청렴교육

---

5-2-2 청렴교육 콘텐츠의 개발

---

[5-2-1] 반부패 청렴교육

부 문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항 목	5-2.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실시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교과서 부패방지 내용 수록</li> <li>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강화</li> <li>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렴교육 선도학교 운영</li> <li>청렴한 공직자, 청렴그룹 인사, 시민단체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강사 Pool 구성</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부패 교육의 대상을 공직자와 학생으로 분리하여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청렴교육 전문가의 양성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임</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교육에 대한 연인원을 공직자의 종류별로 할당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권익위원회 백서 참조</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초 2002년 계획에서 제기한 청렴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li> <li>청렴교육전문가 운영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도</th> <th>교육대상</th> <th>교육인원</th> <th>교육회수</th> <th>과정수</th> </tr> </thead> <tbody> <tr> <td>2011</td> <td>11개</td> <td>2,793</td> <td>50회</td> <td>22개</td> </tr> <tr> <td>2010</td> <td>10개</td> <td>2659</td> <td>50회</td> <td>21개</td> </tr> <tr> <td>2009</td> <td>9개</td> <td>3227</td> <td>46회</td> <td>21개</td> </tr> </tbody> </table> </li> <li>청렴사이버과정 (<a href="http://acrc.coti.go.kr">http://acrc.coti.go.kr</a>)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2011</th> </tr> </thead> <tbody> <tr> <td>수료인원</td> <td>3,636</td> <td>21,473</td> <td>96,893</td> <td>169,370</td> <td>311,832</td> </tr> </tbody> </table> </li> </ul>					연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회수	과정수	2011	11개	2,793	50회	22개	2010	10개	2659	50회	21개	2009	9개	3227	46회	21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료인원	3,636	21,473	96,893	169,370	311,832
연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회수	과정수																																	
2011	11개	2,793	50회	22개																																	
2010	10개	2659	50회	21개																																	
2009	9개	3227	46회	21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료인원	3,636	21,473	96,893	169,370	311,832																																

- **청렴교육 운영실적**

연도	과정수	회수	교육인원
2003	2	2	71
2004	5	10	669
2005	7	10	504
2006	4	8	562
2007	8	27	2,133
2008	7	50	2,655
2009	20	44	3,227
2010	21	50	2,656
2011	22	251	2,793

- 청렴교육전문가와 청렴교육실적 등을 국민권익백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청렴교육전문가 과정 운영**

- 2003. 각급 공공기관이나 감사 및 공직윤리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핵심요원 양성을 위해 개설
- 2011.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원연수,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개설
- 이 외 전문강사양성과정, 청렴소양과정, 시민단체과정 등을 개설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추진(2009)**

- 2011년 7,6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렴교육 강사풀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02년 75명→2009년 129명</li></ul></li><li>• 학생 대상 청렴교육<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2008): 2011년 현재 36개교</li><li>- 대학생 청렴홍보단(2009): 2011년 총 19팀</li></ul></li></ul>
--	--

[5-2-2] 청렴교육 콘텐츠의 개발

부 문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항 목	5-2.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실시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별 수준에 청렴교육의 다양한 교재개발 및 보급</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 및 일반국민대상 청렴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하여 국민전체로 청렴교육을 확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관련 콘텐츠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부서의 설치와 유형별 분류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li> <li>• 청렴 콘텐츠 개발의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교재, 영상물 등)</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 백서 참조</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백서를 통하여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에 대해 홍보</li> <li>•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일반국민용 영상물(선물), 청렴韓세상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청렴송 활용</li> <li>- 2010. 초등학생 청렴글짓기 대회, 중학생 청렴백일장,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 대학생 청렴 홍보단(20개 팀), 어머니 청렴지킴이(8개팀 38명 선발), 반부패 청렴 웅변대회, 청렴에세이 공모전 개최, 청렴춘극 경연대회, 청렴사적지 탐방, 공중파 TV 광고</li> <li>- 2009.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TV 공익성 캠페인 광고, 전국반부패 청렴 웅변대회 개최</li> </ul> </li> <li>• 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초등학생 대상 청렴교육콘텐츠(좌충우동 뭉치네 집), 중고 학생 청렴교육콘텐츠(카툰, 게임 등)</li> <li>- 2010. 중고등학생 청렴교육 교재, 학부모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청렴교육연구학교 홈페이지</li> </ul> </li> </ul>		

	<p>구축, 청렴교육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학생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학생용 애니메이션(좌충우돌 뭉치네 집)</li> <li>•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공직자 청렴교육용 표준 PPT 개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영상물(아름다운 선택)</li> <li>- 2009. 공직자용 청렴드라마(행복을 주는 사람)</li> </ul> </li> </ul>
--	---

---

## 5-3 국민참여 촉진을 위해 반부패 홍보강화

---

### 5-3-1 일반국민의 청렴문화 확산

---

[5-3-1] 일반국민의 청렴문화 확산

부 문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항 목	5-3. 국민참여 촉진을 위해 반부패 홍보강화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문화의 전 국민적 확대를 위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함</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차원의 부패방지 노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 참여의 유발과 사회전반에 걸친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함</li> <li>• 계획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임</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전반에 걸친 청렴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별 수준에 맞는 교재개발, 부패방지 공모전, 국민 제안제 등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었음</li> <li>• 그러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못하였음</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 백서 참조</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편적인 이벤트 위주로 운영</li> <li>• 향후 정기적인 행사운영에 따른 참가자 수나 참가단체 등을 파악하여 백서에 반영 필요</li> <li>•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 대상 청렴문화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li> <li>• 국민참여프로그램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li> <li>• 특별한 시간계획 없이 국민이나 공직자가 청렴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참여확대를 목표로 함</li> <li>• 국민참여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한 세상 좋은 글짓기 대회(참가자 초등 2,830명, 중등 1,463명, 고등 676명)</li> <li>- 청렴인물 문화탐방(상하반기 총 69명 참가, 퇴계종택 등 탐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뉴미디어 청렴 콘텐츠 공모전(UCC 178편, 웹툰 54편, APP 6편 응모)</li><li>•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렴문화 확산 이벤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톡톡 청렴 말풍선 넣기</li><li>* 2차: 포토퍼즐 이벤트</li><li>* 3차: 청렴한 세상 슬로건 짓기 이벤트 실시</li></ul></li></ul></li></ul>
--	--

---

## 5-4 국제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

### 5-4-1 반부패 국제공조 및 정책홍보

---

[5-4-1] 반부패 국제공조 및 정책홍보

부 문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항 목	5-4. 국제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평가부문	평가결과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선진국, NGO 등과 네트워크 구축</li> <li>•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을 국제여론형성 집단 및 국제기구 등에 홍보</li> <li>• 반부패 국제 행사의 적극 참여</li> </ul>		
계획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한국의 청렴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li> <li>• 계획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함</li> </ul>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부패관련 국제행사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부서선정 등을 계획하지 못함</li> <li>• 또한 부패관련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관련 지수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지 못함</li> </ul>		
관련 법령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 백서 참조</li> </ul>		
과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선진국, NGO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반부패 아카데미 참여 의사표시: 오스트리아 내무장관, 엽정공서 티모시 총재 등(2011)</li> <li>- 미국 UN글로벌 컴팩트 방문: 반부패 공개 참여와 네트워크 구축(2011)</li> <li>- 미국 정부윤리청 방문: 한국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고위 공무원 청렴도 평가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2011, 2010)</li> </ul> </li> <li>• 한국의 부패방지노력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엽정공서 방문: 한국의 청렴도, 부패영향평가 등 홍보(201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방문 한국의 반부패, 청렴정책 소개(2011)</li> <li>- EU부패방지총국(OLAF) 방문</li> <li>• 반부패 국제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IACC)」 및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지원</li> <li>- 201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창립총회 참석</li> <li>- 세계은행 초청으로 2010. '아프리카 기업의 책임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li> <li>- 2010. 국제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강화 심포지엄 개최</li> </ul> </li> </ul>
--	---